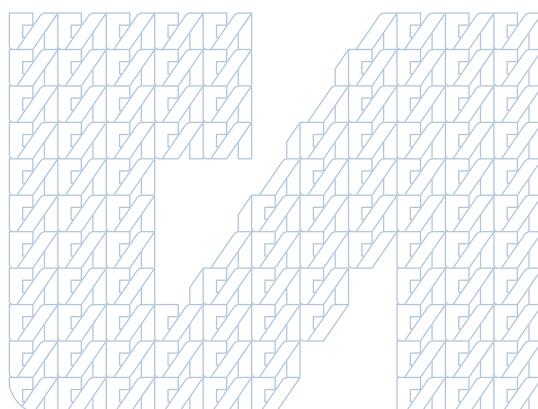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양 성 육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양 성 육

**연구책임**

• 양성욱 /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정책연구 2023-49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발행인 김영진

발행일 2023년 10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37(문지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 나은문화인쇄사 TEL: 042-252-4103 FAX: 042-252-4104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 요약

## ■ 연구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영·유아(만 6세 미만 미취학 아동) 및 아동(만 8세 미만)을 위한 정책은 서비스 지원을 중심에서 2018년 아동수당, 2022년 영아 수당(2023년 현재 부모급여) 도입된 이후 현금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과 유사한 맥락에서 대전시는 2022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신설하고 0~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매월 30만원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유사한 지자체 정책으로는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0~2세 월 10만원)’, 강원도 ‘육아기본수당(0~4세, 월 40만원)’, 광주광역시 ‘출생육아수당, 0~1세, 일시금 100만원, 월 20만원’이 있음.
- 한편, 지자체의 영·유아 대상 현금지원은 기존 일시금으로 지급되던 출산지원금이 확대된 형태로서 경우에 따라 일시금 지원과 현금성 수당의 지급이 병행되거나, 현금성 수당만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음.
- 이렇듯 지속해서 확대 변화하는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쉽지 않으며, 지자체 차원의 성과평가 역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본 고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성과를 양육부담 경감에 초점을 두고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음.

## ■ 문헌검토

-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현금지원 정책의 공통적 그리고 일차적 목적은 양육에 대한 부담 감소에 있음. 이는 유자녀 가구의 소득 보전을 통한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소득재분배, 유자녀 가구의 소득 안정화, 자녀 양육의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

을 제고로 연결됨.

- 위와 같은 맥락에서 관련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들은 아동수당과 출산지원금(혹은 출산장려금)의 출산을 제고 효과를 살펴보기도 함.
- 아동수당이 도입 이후의 연구는 아동수당 대상 가구의 소득 변화, 소득 재분배 효과로서 빈곤, 소비 등의 경제적 상황이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도 하였음. 이는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 수당의 일차적 목적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양육 관련 지출 증가를 통한 아동 권리 및 복지 증진에 있기 때문임.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출산지원금이 확대된 제도로, 출산 관련 지표를 성과 지표로 상정하는 것이 일견 타당함. 다만, 2022년부터 시행된 정책 시행 시기 상 분기 혹은 연 단위 지표인 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에 본 고는 영·유아 대상 보편적 수당의 특성을 지닌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시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을 고려하여, 양육 부담 경감에 초점을 두고 정책의 효과성을 탐색하고자 하였음.

## ■ 대전시 출산, 영유아 아동 인구 동향

- 본 고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효과성의 지표는 아니지만, 관련 지표로서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의 지난 10년간의 동향, 만0~2세와 아동수당 대상 만0~7세 인구의 지난 10년간의 동향을 살펴보았음.
- 지난 10년간 대전시 출생아 수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서 2022년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2021년 대비 3.55% 증가), 합계출산율 역시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2022년 소폭 증가하였음(2021년 0.810명, 2022년 0.842명).
- 지난 10년간 대전시 모의 연령별 출산율 동향은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 40-44세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 35-39세는 소폭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으나, 2022년 기

준 다소 증가하였음.

- 지난 10년간 대전시 조출생률은 합계출산율과 같이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2022년 소폭 증가하였음(2021년 5.1, 2022년 5.3).
- 지난 10년간 대전시 0-2세, 0-7세 영·유아 및 아동 인구 동향을 살펴보면, 2013년 0-2세는 전체 인구의 2.91%, 0-7세는 7.90%에서 지속해서 감소하여, 2019년 0-2세가 1.91%로 2%미만으로 감소하였고, 2020년 현재 0-2세는 전체 인구의 1.62%, 0-7세는 5.31%였음.

##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효과성 탐색

- 조사 개요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효과성을 탐색하기 위해 대전시 거주 0-7세 자녀가 있는 부모를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분석에 포함된 사례는 295명).
  - 설문 조사는 2023년 8월 7일~8월 31일까지 약 4주간 개별 방문조사로 진행되었음. 설문 내용은 영·유아 및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주양육자, 배우자와의 양육분담 비율, 양육 스트레스, 양육지원정책 경험 등 자녀 및 양육 관련 사항 대전형 양육수당 대상 여부, 만족도, 연령 확대 인식 관련 문항, 양육 부담과 관련에 있다고 제시되는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등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포함되었음.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효과성을 탐색하기 위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 여부에 따른 자녀 양육 특성 및 자녀 관련 인식의 차이와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수급 여부를 독립변수로, 자녀 양육비와 자녀 양육비 부담을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음.
- 조사 결과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효과성 탐색을 위한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자녀에 대한 인식에서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형 양육기본수

당 대상자 58.97%, 비대상자 24.46%로 나타나. 양육기본수당 대상자들이 자녀 출산을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음.

-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자 평균 3.38점, 비대상자 평균 2.15점으로 대상자의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0-2세 자녀가 있는 대상자들이 양육 시간이 비대상 가구에 비해 더 많고, 이에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많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자녀 양육비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자가 71.26만원, 비대상자가 57.63만원으로 대상자가 더 많이 자녀 양육비를 지출했고, 자녀 양육비 부담은 양육기본수당 대상이 17.63%, 비대상이 12.60%로 자녀 양육 부담은 양육기본수당 대상자가 더 높았음.
- 더욱 심층적인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효과성 탐색을 위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이 비대상에 비해 자녀양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였고, 자녀 양육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정리하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자녀 양육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없었으나, 자녀 양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음.
- 종합적으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관련이 있었으며, 영·유아 생존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녀 양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영·유아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 정책 제언

- 본 고의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려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 본 고에서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지만, 횡단적 분석과 표본 수의 한계로 매우 제한적인 결과라 할 수 있음. 이에 더욱 심층적인 효과성 분석을 위해서는 시간과 표본 수를 충분히 확보한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 대상 연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양육기본수당이 자녀 양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영·유아의 생존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즉,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영·유아 권리 증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효과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현재 대상 연령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다만, 2023년부터 부모 급여의 시행으로 0-1세 현금 지원액이 증가한 만큼, 대상 연령 확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셋째,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지급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 자녀 양육비 부담을 감소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결과는 양육기본수당이 자녀 양육비 지출에 비해 가구소득 증가에는 효과가 없었기 때문일 수 있음. 지급액의 증가는 가구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지급액 상향 또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득별 추가적 수당 지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을 양육기본수당과 함께 결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0-2세 자녀가 있는 대상자들의 주양육자는 모이며, 양육 시간은 더 길고, 양육 부담의 정서적인 측면으로 양육스트레스가 크다는 점은 영·유아 돌봄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이에 시간제 보육, 영아종일제서비스의 추가적 지원이나 대상 기준 확대(맞벌이, 한부모 등), 시간제 보육 인력 확보, 6-12세 대상 거점온돌방 등의 돌봄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함.



# 차 례

1장 서 론 .....	3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3
2절. 연구 개요 .....	5
2장 문헌 검토 .....	9
1절. 국내 영·유아 및 아동 대상 현금지원 정책 현황 .....	9
1. 국가 차원의 현금지원 정책 .....	9
2. 광역지자체 차원의 현금지원 정책 .....	14
2절. 영·유아 및 아동 관련 지원 정책의 효과성 .....	19
1. 아동수당의 효과성 .....	20
2. 출산지원금의 효과성 .....	23
3. 소결 .....	26
3장 대전시 출산, 영·유아 및 아동 인구 동향 .....	31
1절. 대전시 출산, 영·유아 및 아동 인구 동향 .....	31
1. 대전시 출산 동향 .....	31
2. 대전시 영·유아 아동 인구 동향(0-7세) .....	35
2절.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현황 .....	41
1.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개요 .....	41
2.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현황 .....	42
4장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효과성 탐색 .....	47
1절 조사 개요 .....	47
1. 조사 개요 .....	47
2. 조사 설계 .....	48

2절 조사 결과 .....	55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	55
2.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효과성 탐색 .....	67
5장 결론 및 논의 .....	77
1절. 연구 결과의 요약 .....	77
2절. 정책 제언 .....	79
참고문헌 .....	81
부록 1. 설문지 .....	84
부록 2. 통제변수와 종속변수 관계 .....	95

## 표 차례

[표 2-1] 아동수당 개요 .....	10
[표 2-2] 부모급여 개요 .....	11
[표 2-3] 양육수당 개요 .....	12
[표 2-4] 첫만남 이용권 개요 .....	13
[표 2-5] 광역자치단체의 현금·현금성·상품권 지원 .....	15
[표 2-6]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	17
[표 3-1] 대전시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동향 .....	32
[표 3-2] 대전시 모의 연령별 출산율 동향 .....	33
[표 3-3] 대전시 조출생률 동향 .....	35
[표 3-4] 대전시 영·유아 아동 인구 동향(0-7세) .....	36
[표 3-5] 대전시 동구 영·유아 및 아동 인구 동향(0-7세) .....	37
[표 3-6] 대전시 중구 영·유아 및 아동 인구 동향(0-7세) .....	37
[표 3-7] 대전시 서구 영·유아 및 아동 인구 동향(0-7세) .....	38
[표 3-8] 대전시 유성구 영·유아 및 아동 인구 동향(0-7세) .....	38
[표 3-9] 대전시 대덕구 영·유아 및 아동 인구 현황(0-7세) .....	39
[표 2-10]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개요 .....	41
[표 3-12]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실지급 인원(2022년) .....	43
[표 4-1] 자녀 양육 특성 차이 분석 내용 .....	50
[표 4-2] 변수 정의 및 측정 .....	51
[표 4-3]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55
[표 4-4] 자녀 특성 .....	57
[표 4-5] 자녀 양육 특성 .....	58
[표 4-6] 자녀 관련 인식 / 자녀 가치 / 양육스트레스 .....	59
[표 4-7] 둘째 이상 자녀 출산에 중요 사항 .....	60
[표 4-8] 양육 관련 현금 지원 정책 이용과 인식 .....	61
[표 4-9] 양육 관련 현물/바우처 지원 정책 이용과 인식 .....	62

[표 4-10] 자녀 양육비	63
[표 4-11]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수령 기간	63
[표 4-12]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출 항목 및 지출액	64
[표 4-13]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중요도와 만족도	65
[표 4-14]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예산, 도입 적절성, 연령 조정에 대한 인식	66
[표 4-15]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 여부에 따른 자녀 양육 특성	67
[표 4-16]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 여부에 따른 자녀에 대한 태도	68
[표 4-17]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에 따른 자녀 양육 부담 I: 독립표본 t 검정	69
[표 4-18]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에 따른 자녀 양육 부담 II: 공분산분석	70
[표 4-19] 모형 I: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 자녀 양육비에 미치는 영향	71
[표 4-20] 모형 II: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 자녀 양육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	72
[부록 표 1] 통제변수별 자녀 양육비 차이	95
[부록 표 2] 통제변수별 자녀 양육비 부담 차이	95
[부록 표 3] 대전형 양육기본수당과 가구 소득	96
[부록 표 4]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97

##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구성 .....	6
[그림 2-1] 부모급여 제도도입 전후 비교 .....	11
[그림 3-1] 대전시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동향(2013-2022) .....	32
[그림 3-2] 대전시 모의 연령별 출산율 동향(2013-2022) .....	34
[그림 3-3] 대전시 영·유아 아동 인구 동향(전체 인구 대비 비율: 0-7세) .....	36
[그림 3-4] 대전시 자치구별 0-2세 인구 동향(전체 인구 대비 비율) .....	40
[그림 3-5] 대전시 자치구별 0-7세 인구 동향(전체 인구 대비 비율) .....	40
[그림 4-1] 연구 모형 .....	50



## 서 론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2절. 연구 개요

**1장**



# 1장 서론

##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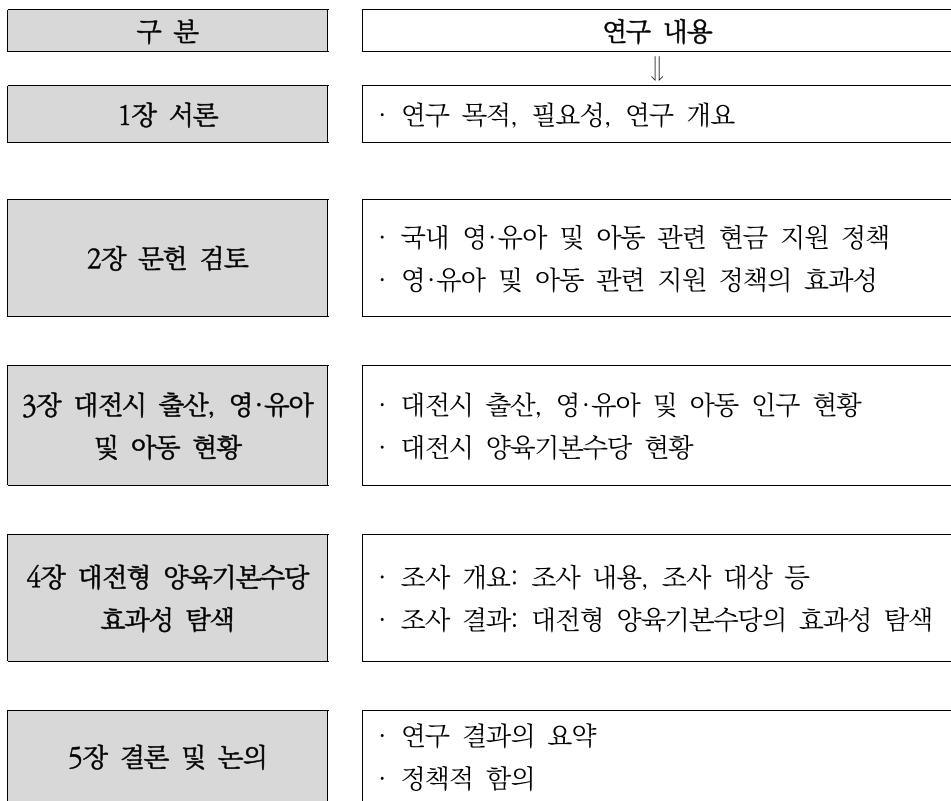
- 우리나라 영·유아(만 6세 미만 미취학 아동) 및 아동(만 8세 미만)을 위한 정책은 크게 현금, 서비스, 시간 지원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부모 급여(기존 영아수당)와 출산장려지원금과 같은 현금지원 정책, 둘째, 시간제 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등 서비스 지원 정책 셋째,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가, 유연근무제 등 시간 지원이 있음.
- 그동안 관련 정책 지원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18년 아동수당, 2022년 영아수당(2023년 현재 부모급여)이 도입된 이후 점차 현금지원이 확대되고 있음(최윤경 외, 2022).
- 서비스 지원은 양육(돌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며, 현금지원은 양육 비용의 감소를 통해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지원하여, 영·유아 및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등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음(유해미 외, 2021; 최영·김슬기, 2017).
- 최근 도입된 영아수당(현 부모급여)은 대상 연령인 0~1세 이하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각각 0세 3.4%, 1세 36.6%로 낮고, 직접 양육 선호 비율이 0세 98.6%, 1세 85.9%로 높게 나타난 배경에서 도입된 것이라 할 수 있음(대한민국정부, 2021:77).
-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과 유사한 맥락에서 대전시는 2022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신설하고 0-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매월 30만원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유사한 정책으로는 충청남도 ‘행복 키움수당(0~2세 월 10만원)’, 강원도 ‘육아기본수당(0~4세, 월 40만

원)', 광주광역시 '출생육아수당, 0~1세, 일시금 100만원, 월 20만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지자체의 영·유아 대상 현금지원은 기존 일시금으로 지급되던 출산지원금이 확대된 것임.

- 한편, 중앙정부의 현금지원과 지자체의 현금지원과 관계는 정립되지 못한 상황으로 영·유아 및 아동 관련 양육 지원의 복잡한 관계를 통합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요구됨(최윤경 외, 2022). 또 한편으로는 지속해서 확대 변화하는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쉽지 않으며, 지자체 차원의 성과평가 역시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문정희·김성순, 2017).
- 이는 비교적 최근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이 도입되어 국외를 대상으로 하는 효과성 검증들은 다수 이루어졌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논의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임(강지영, 2020; 김보름, 2021; 김이래, 2021). 또한, 영·유아 및 아동 대상 관련 정책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응으로 결혼, 임신·출산·양육, 일·가정 양립, 가족 지원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22), 현금성 지원만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관련 정책들의 목적이 출산율 재고에 초점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음. 즉, 출산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요인 등 무수하고 다양한 요인과 관계가 있어, 현금성 지원과 출산율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오삼권·권형주, 2018).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 및 아동 대상 현금지원 정책들의 성과를 확인하는 것은 향후 정책을 수정하고 이를 반영하는 환류 과정으로서 중요하다 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본 고는 대전시 영·유아 대상 현금지원의 하나로써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성과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다양하게 제시되는 효과 중 양육 부담 경감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음. 이는 현금 지원을 포함하여 관련 정책의 목적이 최종적으로 출산율 재고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차적 목적은 대상 가구의 양육비 지출과 소득을 보전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있기 때문임.

## 2절. 연구 개요

- 본 고는 대전시 양육기본수당의 성과를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동수당, 영아 수당, 출산장려금 등 중앙 및 지자체의 영·유아 및 아동 관련 현금성 지원과 관련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음.
- 2장 문헌 검토에서는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정책 관련 문헌들과 웹상의 문서들을 검토하여 관련 정책들의 개괄적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과 그 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였음.
- 3장 대전시 현황 분석에서는 대전시 영·유아 및 아동 현황과 선행연구에서 관련 정책의 효과성 혹은 성과로 논의되는 합계출산율, 조출산율 등 출산 관련 통계자료를 정리하였고,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개요와 현황을 2022년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음.
- 4장 조사 결과에서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성과 탐색을 위한 조사 설계, 조사 내용, 분석 방법,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음. 조사 대상은 대전시 거주 0-7세 자녀가 있는 부모이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과 비대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비비례할당표집을 활용하여 조사 대상을 선정하였음. 조사 내용에는 배우자와의 양육 분담 비율, 지난 3개월간 양육 지출 비용, 양육스트레스 등 자녀 양육 부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자들의 수당 지출 항목 및 지출액, 도입에 대한 인식, 연령 대상 조정에 대한 인식 등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과 관련한 문항이 포함되었음. 조사 결과의 분석에서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 여부에 따른 자녀 양육 특성과 자녀 인식에 대한 차이 분석과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 자녀 양육비와 자녀 양육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음.
- 5장 결론 및 제언에서는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효과성 탐색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검토 사항들을 제시하였음.



[그림 1-1] 연구 구성

## 문헌 검토

- 1절. 국내 영·유아 및 아동 대상 현금지원 정책 현황
- 2절. 영·유아 및 아동 관련 지원 정책의 효과성

**2장**



## 2장 문헌 검토

-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 영·유아 및 아동 대상 지원정책은 현금, 서비스, 시간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본 고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과 같은 현금지원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동향과 주요쟁점을 살펴보자 하였음.
- 1절에서는 영·유아 및 아동 대상 현금지원 정책을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2절에서는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성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효과성 탐색 관련 요인을 살펴보았음.

### 1절. 국내 영·유아 및 아동 대상 현금지원 정책 현황<sup>1)</sup>

#### 1. 국가 차원의 현금지원 정책

##### 1) 아동수당

- 아동수당은 2018년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도입되었으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보건복지부, 2023a).
- 지급 대상은 만 8세 미만(0~95개월)으로,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함.

---

1) 현금지원정책 및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3 도 시행 계획」(대한민국정부, 2023a),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3 도 시행계획(지방자치 단체)」(대한민국정부, 2023b)과 각 사업 안내 및 관계 법령의 내용을 발췌하였음.

[표 2-1] 아동수당 개요

구분	내용
지급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8세 미만 아동</li> <li>-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li> <li>: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li> <li>-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li> </ul>
지급액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금지급(계좌 이체)원칙</li> <li>-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자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li> </ul>

출처: 보건복지부(2023a) <2023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p.4

## 2) 부모급여(구 영아수당)

- 부모급여는 2022년 시행된 영아수당이 확대되고 정책명이 변경된 것임. 「아동수당법」에 근거<sup>2)</sup>한 현금지원이며,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부모급여의 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으로 2023년도 기준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보육료 혹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바우처를 지급함.
- 영아수당은 만 0~1세 모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월 30만원 현금 혹은 월 49.9만원 바우처를 지급한 반면, 부모급여 도입 후는 2023년 현재 만 0세는 월 70만원 현금 지원 또는 월 51.4만원 바우처와 현금 차액인 18.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만 1세는 월 35만원 현금 혹은 월 51.4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함. 2024년부터 부모급여 지급액은 만 0세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임.

---

2) 「아동수당법」 제4조 ① 아동수당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표 2-2] 부모급여 개요

구분	내용	
지급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2세 미만 아동(0~23개월)</li> <li>-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li> <li>: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li> <li>-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li> </ul>	
지급액	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0세 1인당 월 70만원</li> <li>·만 1세 1인당 월 35만원</li> </ul>
	보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0세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 18.6만원 지급</li> <li>·만 1세 1인당 월 보육료 전액</li> </ul>
	종일제 아이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li> </ul>
지급방식	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금지급(계좌 이체)원칙</li> <li>-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li> </ul>
	보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서비스 이용권</li> <li>- 만 0세는 차액(18.6만원) 현금으로 지급</li> </ul>
	종일제 아이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서비스 이용권</li> </ul>

출처: 보건복지부(2023b)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pp3-7.

2021년			2022년			2023년					
연령		만0세	만1세	연령		만0세	만1세	연령		만0세	만1세
보 육	시설 미이용	월 20	월 15	보 육	시설 미이용	월 30* (현금)		보 육	시설 미이용	월 70 (현금)	월 35 (현금)
	시설 이용	월 48			시설 이용	월 49.9 (바우처)			시설 이용	월 51.4 (바우처) + 월 18.6 (현금)	월 51.4 (바우처)

\* '22.1.10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그림 2-1] 부모급여 제도도입 전후 비교

출처: 보건복지부(2023b)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p.4

### 3) 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

- 양육수당<sup>3)</sup>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및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미취학 만 0~5세(86개월)의 영유아가 대상임. 2022년 이후 출생한 경우 부모급여(구 영아수당) 수급 기관인 제외한 24개월부터 지급함.
- 지급액은 만 2세(24개월 이상)기준 10만원이며, 농어촌 양육수당(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가정 양육 아동)의 경우 15만 6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은 20만원임.

[표 2-3] 양육수당 개요

구분	내용	
지급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아동으로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li><li>- 영아수당 도입으로 2022년 이후 출생아는 24개월부터 양육수당 지급</li></ul>	
지급액	양육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만 0세(0-11개월): 20만원</li><li>·만 1세(12-23개월): 15만원</li><li>·만 2세부터(24-86개월 미만): 10만원</li></ul>
	농어촌 양육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만 0세(0-11개월): 20만원</li><li>·만 1세(12-23개월): 17.7만원</li><li>·만 2세(24-35개월): 15.6만원</li><li>·만 3세(36-47개월): 12.9만원</li></ul>
	장애아동 양육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만 2세(0-35개월): 20만원</li><li>·만 3세부터(36-86개월 미만): 10만원</li></ul>
지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현금지급(계좌 이체)</li><li>-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동향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조치 아동의 경우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로 입금</li></ul>	

출처: 보건복지부(2023b) <2023년 보육사업안내>, pp323-371.

3) 양육수당은 가정양육수당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영유아보육법」과 <2023 보육사업안내>에 정식명칭은 양육수당임. 본 고에서는 정식 명칭으로서 양육수당을 사용하였음.

#### 4) 첫만남 이용권

- 첫만남 이용권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2년부터 시행되었음(보건복지부, 2023c).
-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며,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를 지급함. 다만, 예외적으로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조치 아동에 대해서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으로 지급함.
- 사용 기간은 이용권 지급일부터,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며, 이후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됨.

[표 2-4] 첫만남 이용권 개요

구분	내용
지급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li><li>- 출생신고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li><li>-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li><li>-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보호조치 아동으로 출생신고 전에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li></ul>
지급액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이용권
사용기간	·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지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li><li>-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가능 •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li><li>-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동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조치 아동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li></ul>

출처: 보건복지부(2023b) <2023년 보육사업안내>, pp323-371.

- 위에서 언급한 현금지원 외 장애아동수당과 한부모가정아동지원,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장려금, 공제 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등이 있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9; 최윤경 外, 2022 재인용).

## 2. 광역지자체 차원의 현금지원 정책<sup>4)</sup>

-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 정책은 생애단계별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으로 구분하고, 지원 유형은 현금, 상품권, 현금성, 현물, 바우처, 서비스, 인프라 구축, 교육, 홍보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보건복지부, 2022:69-70).
- 본 고에서는 대전형 양육수당과 생애 단계와 지원 유형이 동일 혹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출산 이후 현금, 상품권, 현금성 지원을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한편, 보건복지부(2022)의 분류에 따르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충남 행복키움 수당과 같은 수당형 현금지원은 출산지원금으로 분류되어 있음. 이에 본 고에서도 광역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을 따로 분류하여 정책의 개요를 살펴보았음.
- 위와 같은 정책 중 소득 기준(예, 중위소득 120% 이하), 자녀 수 기준(예, 세 자녀 이상), 특정 지역이나 집단 기준(예, 농어촌지역, 국가유공자, 미혼모, 한부모 등) 등의 자격 기준이 있는 정책은 정책 검토에서 제외하였음.

### 1) 현금·현금성·상품권 지원

- 지역 거주 조건만 있고, 다른 특정 조건이 없는 광역지자체의 현금·현금성·상품권 지원은 모두 출산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정리

---

4) 광역지자체의 현금, 현금성, 상품권 지원 정책 개요는 보건복지부(2022). 〈2022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pp.106~120.에서 발췌하였음.

하면 아래 [표 2-5]와 같음.

[표 2-5] 광역자치단체의 현금·현금성·상품권 지원

구분	지역	사업명	지원기준	지원내용
현금	대구	아이사랑 통장갖기	거주자, 만0~5세 / 출생신고 가정	출산축하 통장발급 (1만원)
	강원	산모산후 건강관리지원	신청일기준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출산후 산모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처방 약국 발생 의료비 지원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이상 30만원 출산 후 6개월 이내 지원)
현금성	경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출생일 및 신청일 관내 거주 출생 후 12개월 이내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지역 따라 카드, 모바일, 지류 지급)
상품권	제주	출산여성 한약 지원사업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상 거주 여성	산후조리용 20만원 한약1제 10만원 할인

출처: 보건복지부(2022). 〈2022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pp.106~120.

- 먼저, 대구광역시의 “아이사랑 통장갖기”는 만0-5세까지 출생신고 가정에게 출산 축하 통장을 발급하고 1만원을 지원하는 현금지원 정책임.
- 강원도의 “산모산후건강관리지원”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출산 후 의료기관 및 처방에 따른 약국 발생 비용을 첫째아 15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까지 영수증 금액만큼 실비로 지원하는 현금지원 정책임.
-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관내 거주 산모(12개월 이내)에게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정책으로

지급된 지역화폐는 산후조리비, 모유수유용품, 산모용품 및 신생아 용품 그리고 산모건강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제주도의 “출산여성한약지원”사업은 관내 거주 산모에게 산후조리용 한약 복용 희망자에 한해 20만원 상당의 한약을 10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지원하는 상품권 지원 정책임.
- 정리하면, 대구광역시의 “아이사랑 통장갖기”를 제외하고 강원도, 경기도, 제주도의 지원 정책은 모두 출산 이후 의료비, 산후조리비 등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현금지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과는 차이가 있음.

## 2) 출산지원금<sup>5)</sup>

- 광역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은 출산, 양육 관련 부담 완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산에 대응하는 지역의 인구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음(장인수·정찬우; 2022).
- 다만, 광역지자체 출산지원금의 대상과 금액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대상은 2022년 기준 첫째아 지원 52.9%(9개), 둘째아 및 셋째아 이상이 64.7%(11개)가 시행되고 있음(첫만남 이용권 시행 이후 2021년 14개에서 2022년 11개로 축소).
- 지원금액 역시 출생순위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첫째아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400만원, 둘째는 최소 20만원 최대 2,400만원, 셋째 이상 최소 10만원, 최대 2,400만원임.
- 대전시와 더불어 강원, 충남, 제주의 경우는 분할금(월 단위, 제주는 년 단위)으로 보편적 수당과 유사한 형태이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우는 일시금 지원, 경북은 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음.

---

5) 광역지자체의 출산지원금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2022). <2022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pp.335-340의 내용을 발췌 정리하였음. 출산지원금의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른 지원금액에 차이를 두고 있어 보편적 현금지원이라 할 수 없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유사한 형태로서 분류되기 때문에 현재 모든 광역지자체의 지원 제도를 제시하였음.

[표 2-6]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지역	사업명	지원기준	지원내용
부산	출산 지원금	2022년 부산 출생 모든 둘째 이후 출생아	둘째아 이상 100만원 일시금
대구	출산 축하금	2022년 이후 둘째아 이상 거주자 및 출생신고 가정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일시금
인천	출산 육아 지원금	출생일,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 인천시 주민등록 자 인천시 출생신고자	첫째아부터 100만원 일시금
광주	광주 출생 축하금	2022.1.1. 이후 광주광역시 출생신고 아동, 광주광역시 3개월 이상 거주 부 또는 모	첫째아부터 100만원 일시금
대전	양육 기본 수당	만0~2세 영유아 부 또는 모 대전시주민등록 출생아, 6개월 이상 대전시 주민등록 부 또는 모	첫째아부터 월 30만원 (월 30만원×36개월)
울산	출산 지원금	출생신고 출산가정,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 및 거주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일시금
세종	출산 축하금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상 등재 및 거주 부 또는 모 (미혼모 포함)	첫째아 이상 120만원 일시금
강원	육아 기본 수당	2019.1.1. 이후 출생아 중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 강원도 내 1년 이상 거주자	첫째아부터 월 50만원 (월 50만원×48개월)
충남	행복 키움 수당	출생월 이후 만36개월 미만 아동	첫째아부터 월 10만원 (월 10만원×36개월)
경북	출산 출하 쿠폰	출산일 기준 부모 경상북도 내 주소 둔 가정	첫째아부터 10만원 상품권(온라인 쿠폰)
제주	육아 지원금	2021.1.1.부터 둘째자녀 출산 또는 입양한 부 또는 모로 출산(입양)일 포함 12개월 전부터 주소 두고 거주한 자	첫째아 50만원(일시금) 둘째아 이상 1,000만원 (년 200만원×5년)

출처: 보건복지부(2022). 〈2022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pp.335-340.

- 부산의 경우 둘째아 이상, 대구는 둘째아, 셋째아 이상의 지원금에 차이가 있으며, 울산은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으로 지원금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종합하면, 광역자치단체의 영·유아 및 아동 현금지원과 출산지원금은 지역별로 대상, 금액,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선행연구는 이러한 지역 간 차이를 인구감소에 민감한 지역에서 절대적 금액과 자율성을 확대한 출산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인구감소 완화를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함(장인수·정찬우; 2022). 이는 부산, 대구, 울산, 제주와 같이 둘째 이상의 출산에 더 많이 지원하는 출산 인센티브 제공으로 구현되어 있음.

## 2절. 영·유아 및 아동 관련 지원 정책의 효과성

- 2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 및 광역지자체 차원의 현금지원 정책의 공통적 그리고 일차적 목적은 영·유아 및 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 감소에 있음.
- 이는 유자녀 가구의 소득 보전을 통한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소득재분배, 유자녀 가구의 소득 안정화, 자녀 양육의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율 제고로 연결됨(강지영, 2020).
-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역시 자녀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감소가 일차적인 목적이지만,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최종적으로는 출산인구 증가를 통해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지역사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제시됨(박은순·하태수, 2018; 장인수·정찬우, 2022; 정호영, 2020).
- 위와 같은 맥락에서 관련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들은 아동수당과 출산지원금(혹은 출산장려금)의 출산율<sup>6)</sup> 제고 효과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동수당이 도입된 이후의 연구들은 아동수당 대상 가구의 소득 변화, 양육비 지출과 양육 부담 변화, 소득재분배 효과로서 빈곤, 소비 등의 경제적 상황이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도 하였음(강지영, 2020; 김대철, 2018; 김보름, 2011; 김우영·이정만, 2018; 김이래, 2021; 남재현, 2021; 박충주·송현재, 2014; 송현재·김지영, 2013; 이래혁·남재현, 2020; 장인수·정찬우, 2022; 정호영, 2020, 최영·김슬기, 2017).
- 본 고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제도로 분류되며 비록 지원 대상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아동수당과 같이 보편적 수당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하여,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아동수당과 출산지원금의 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음.

---

6) 선행연구에서 출산율은 출산력, 출생률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음.

## 1. 아동수당의 효과성

- 다수의 OECD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아동수당과 같은 아동 급여(Child Benefits)의 하나로 보편적 아동수당(Universal Child Allowance) 혹은 보편적 가족수당(Universal Family Allowance)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18세 이하 아동에게 조건 없이 현금이나 세금 형태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ODI/UNICEF, 2020; 남재현, 2021 재인용).
- 일반적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은 연령 조건 외에 다른 특정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급여로써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 권리 및 복지 증진과 더불어 아동 빈곤 완화, 소득재분배 및 출산율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강지영, 2020; 보건복지부, 2020; Shaefer et al., 2018; ODI/UNICEF, 2020; 남재현, 2021 재인용).
-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은 2018년 도입 당시 만 6세 미만 아동 중 소득 및 재산이 하위 9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방식에서 2019년 1월 소득 및 재산 기준 폐지, 같은 해 9월 만 7세 미만, 2021년 12 월 만 8세 미만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면서, 보편적 급여의 형태를 갖추었음.
- 아동수당 도입 이전의 국내 연구들은 아동수당의 기대효과를 예측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선행연구는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OECD 국가의 자료 혹은 모의실험 활용하여 아동 빈곤, 노동 공급, 소득재분배, 출산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음(김대철, 2018; 남상호, 2018; 이경희·민인식, 2018; 유재민, 2019; 최영·김슬기, 2017).
- 아동수당 도입 이후에는 아동수당이 지니는 경제적 효과로서 아동 가구의 소득과 소비 그리고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음(강지영, 2020; 김보름, 2021; 김이래, 2021; 남재현, 2021; 이래혁·남재현, 2020).

- 아동수당 도입 이전의 연구로써 최영·김슬기(2017)는 기존 연구의 결과가 혼재된 있는 이유를 현금지원정책의 목적과 정책효과가 상이함에도 구분 없이 현금지원을 하나의 변수로 분석하거나 횡단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고, 아동수당과 출산율의 관계를 시계열자료를 통해 실증하였음. OECD 19개국의 1980-2015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구성하고, 아동수당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동수당이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음. 또한, 자녀 수에 따라 급여 액이 증가하거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출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출산 장려 기제가 출산율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있었음.
- 김대철(2018)은 금융위기 이후 가족지원 정책의 추진과 출산율 변화, 출산율 회복 국가와 출산율이 낮은 국가군을 별도로 추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OECD 26개국의 55년(1960년-2016년)간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수당 비중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 아동수당은 합계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출산율 회복 국가가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 비해 아동수당이 합계율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남상호(2018)는 아동수당이 빈곤 가구의 소득보장을 위해 시작된 제도임을 언급하고, 아동수당제도가 빈곤 및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 도입 전과 후의 소득분포함수를 추정한 후 추정된 분포함수로부터 불평등 및 빈곤지수를 도출하여 이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았음. 분석 결과 아동수당은 상대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빈곤율 감소와 빈곤 심도 감소에 비해 빈곤 그룹 내 불평등도의 감소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빈곤과 불평등 개선의 부분적 효과가 있다고 제시하였음.
- 이경희·민인식(2018)은 아동수당의 출산율 증가 효과라는 본래의 목적 뿐만 아니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의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음. 이들은 개인 수준에서 노동시장 참여 결정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국노동패널 9차(2006)~19차(2016년)를 활용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하였음. 분석 결과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가

진 기혼여성의 2.63%, 전일제 일자리를 가진 기혼여성의 3.21%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20만 원으로 인상된 경우에는 시간제 근로자의 5.13%, 전일제 근로자의 6.35%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부적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음.

- 유재민(2019)은 아동 가구의 특성 예컨대, 한부모, 다자녀 가구 등 양육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 등에 따라 정책효과가 상이할 가능성 이 있음을 지적하고, 아동수당의 빈곤 완화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구 특성에 따라 살펴보고자 하였음. 한국복지패널 12차년도 가구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수당과 세제지원이 빈곤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또한 가구 특성을 구분하였을 때도 아동수당이 세제 지원보다 빈곤 완화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음.
- 아동수당 도입 이후 수행된 연구로 강지영(2020)은 2018-2019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수당이 아동가구(가구주 연령 25-45 세)의 소득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빈곤선의 기준은 균등화 중위소득 40, 50, 60% 이하를 빈곤선으로 설정하고, 가처분소득, 총소득 기준으로 소득액, 빈곤 여부, 빈곤선 대비 소득 비율에 아동수당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아동수당은 아동 가구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빈곤 완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총소득,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 집단의 상대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김보름(2021)은 아동수당 도입 후의 정책목표 수행을 평가하는 차원에서 아동 가구의 소득, 빈곤, 소비와 더불어 양육비 부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복지패널 10~1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이를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 아동수당은 아동 가구의 소득 증가, 양육비 경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어 아동 권리보장이라는 정책 목표의 일부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 김이래(2021) 역시 아동수당의 정책효과로 증가한 소득이 정책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소비·지출 항목의 변화를 초래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가계동향조사 지출 부문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수당이 아동 가구의 세부지출항목 변화와 총생활비 그리고 엔젤지수(angel coefficient)와 엉겔지수(Engel's coefficient)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 아동수당은 세부지출항목 대부분에서 효과가 없었으나, 주거·수도 광열비 지출을 증가시켰고, 엔젤지수와 엉겔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급여 수준의 점진적 확대와 양육 부담이 큰 가구(한부모 등)에 추가적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음.

- 남재현(2021)은 도입 후 기간이 짧아 분석 자료가 부족하여 아동수당의 다양한 효과 실증연구가 제한적임을 지적하면서,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노동패널을 동시에 활용하여 아동수당과 기혼여성의 노동 공급의 관계를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 아동수당은 기혼여성의 노동 공급 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며,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그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만0~3세 자녀, 만0~2세 자녀, 만0~1세의 영아 순으로 아동수당이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음.

## 2. 출산지원금의 효과성

- 출산지원금은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책으로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음. 2002년 전남 함평군을 처음으로 2005년부터 활발하게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2022년 기준 광역자치단체 11개, 기초지자체 211개가 출산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박은순·하태수, 2018; 박창우·송현재, 2014; 보건복지부, 2022). 출산지원금(혹은 출산장려금)이라는 정책 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일차적 목적은 지역의 출산 제고와 이를 통한 지역 인구감소를 둔화시키는 것에 있음(장인수·정찬우, 2022; 정호영, 2020).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출산지원금의 정책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은 출산 지원금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김우영·이정만, 2018; 박창우·송현재, 2014; 석호원, 2011) 다만, 연구 간에는 지역 단위, 출산율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출산율 관련 통제 변수 등에서 차 이를 보이며, 출산율 제고 효과도 혼재되어 있음. 일부는 자자체별로 출산지원금이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에서 출발하였고, 지원금의 차이에 따른 인구 유인 정책으로서의 목적도 지니고 있음에 주목하기도 하였음(송현재·김현아, 2014).
- 석호원(2011)은 출산지원금이 자치단체에 따라 시행 여부,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의 차이 등 다양한 논의와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어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의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음. 분석 결과 출산장려금 정책은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그리고 연령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일회성 정책이나 출산율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원인 진단을 통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음.
- 박창우·송현재(2014)는 지속되는 출산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논쟁과 관련하여, 전국단위 분석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2005년~2011년 전국 230개 기초자체를 분석단위로 인구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출산지원금(출생순위별 일시금 지원 여부, 출생순위별 지원금액)이 총 출생아 수와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 출산지원금 수준은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출산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원하면, 첫째아, 둘째아 출생 수가 증가하였으나, 셋째 이상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이에 일시급 형태와 출생 인센티브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송현재·김현아(2014)은 출산지원금이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에서 출발하였음에 주목하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20-39세 여성인구의 이동에 출산지원금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분석결과 출산지원금은 20-38세 여성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치며, 연령 집단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예컨대, 25~29세는 첫째 출산장려금이 높은 곳으로, 30~34에 연령은 둘째 출산장려금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발견되어 출생아 수와 출산 인센티브 지원에 따라 인구이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김우영·이정만(2018)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 효과에 대한 분석이 제한적임 특히, 충청 지역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충청지역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0년에서 2016년까지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과 15-49세 여성인구의 순유입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 출산장려금은 도입 후 약 8년까지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그 영향이 감소하여, 일정 정도의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고, 여성 인구의 순유입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나타났지만, 순유입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제시하였음.
- 정호영(2020)은 선행연구의 분석 자료, 지역, 방법 등에 따라 출산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결과가 혼재되어 있어 지역이나 맥락별로 명확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면서, 인구소멸위험지수가 높은 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정책 도입 시기를 고려한 이원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인 및 지역의 특수적 선형 시간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을 수행하였음. 분석 결과 출산장려금이 조출생률에 미치는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음. 이에 출장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음.
- 장인수·정찬우(2022)는 출산지원금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이 지원금의 규모와 지역 출산력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액이 조출생률, 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중범위지리가중회귀모형 (Multiscal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model, MGWR)을 통해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 지역 간 공간성을 고려하지 않는 OLS모형에서는 1인당 출산지원금 평균 수령액은 조출생률, 합계출산율, 5세 단위 모의 연령별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MGWR 모형의 분석결과는 영향력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

타나고 있었음. 구체적으로 영향력이 낮은 지역은 지역인구감소, 인구 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수준이 악화되고 있고 동시에 재정 여건 등 정책 치진 여건이 높지 않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정리하면, 다수의 선행연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의 정책 효과에 대한 경험적 검증은 분석 자료, 지역, 방법 및 출산 관련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그 결과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출산지원금의 출산율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움.

### 3. 소결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출산 지원 정책으로 분류되고 실재로 출산지원금이 확대된 정책이자, 동시에 연령 조건 외에 다른 특정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보편적 수당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아동수당,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논의한 선행연구에 기반하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정책 효과는 대상 가구인 영·유아 가구의 빈곤, 모의 노동 시장 참여, 소득재분배와 더불어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를 포함한 출산 관련 지표로 살펴볼 수 있음.
- 본 고에서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성과 혹은 효과성 탐색에 있어서 양육 부담 경감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으며, 그 이유는 대전형 양육기본 수당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어 그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임.
- 즉,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출산지원금이 확대된 제도로, 출산 관련 지표를 성과 지표로 상정하는 것이 일견 타당하지만, 시행 기간을 고려하면 분기 혹은 연 단위 지표인 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음. 그뿐만 아니라 2022년에 시행된 제도가 2022년 출산 관련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은 인과 관계에서 원인의 시간적 선행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
- 더불어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 수당의 일차적 목적이 아동 양육에 따

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양육 관련 지출 증가를 통한 아동 권리 및 복지 증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본 고는 대상 가구의 자녀 양육비 지출과 부담을 중심으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효과성을 탐색하고자 하였음.



## **대전시 출산, 영·유아 및 아동 현황**

1절. 대전시 출산, 영·유아 및 아동 인구 현황

2절. 대전시 양육기본수당 현황

**3장**



# 3장 대전시 출산, 영·유아 및 아동 인구 동향

## 1절. 대전시 출산, 영·유아 및 아동 인구 동향

- 대전시 출산, 영·유아 및 아동 인구 현황에서 출산 관련 동향은 선행연구에서 고려한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합계출산율과 조출생율의 지난 10년간의 동향을 제시하였고, 영·유아 및 아동 인구 현황은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 연령인 만0~2세와 아동수당 대상 만0~7세 인구의 지난 10년간의 동향을 제시하였음.

### 1. 대전시 출산 동향

#### 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sup>7)</sup>

- 지난 10년간 대전시 출생아 수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서 2022년 소폭 증가하였음. 구체적으로 2013년 출생아 수는 14,099명에서 지속해서 감소하여 2018년 9,337명으로 1만명 이하로 감소하였고, 2021년 7,413명까지 감소하였다가, 2022년 7,677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음 (전년 대비 3.55% 증가).
- 지난 10년간 대전시 합계출산율 역시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2021년, 2022년에 소폭 증가하였음. 2013년 대전시 합계출산율은 1.234명, 2014년 1.250명, 2018년 0.952명으로 처음으로 1명대 이하로 낮아졌고, 2020년 0.805명까지 감소하였다가, 2021년 0.810명, 2022년 0.842명으로 매우 소폭이지만 증가하였음. 2022년 기준으로 대전시는 전국 평균보다는 합계출산율이 높지만, 다른 특·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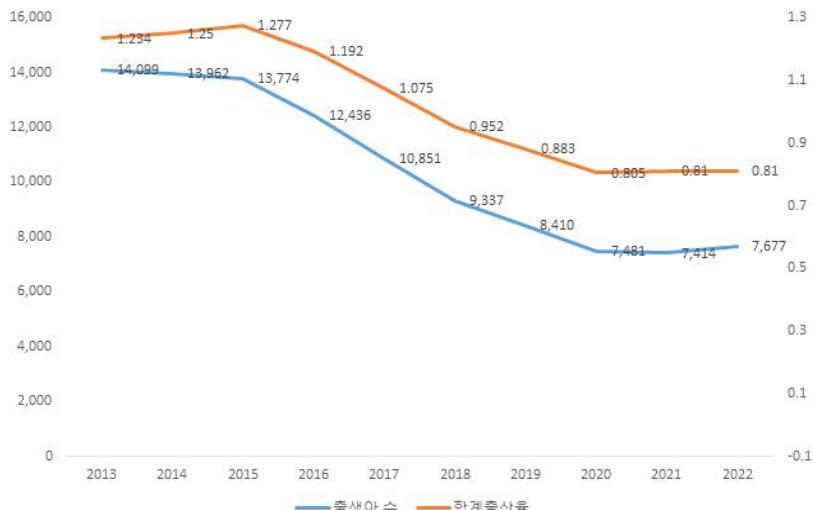
7) 합계출산율 (TFR, Total Fertility Rate)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

[표 3-1] 대전시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동향

(단위 : 명, %)

구분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명	증감률	
대전시	2013	14,099	-
	2014	13,962	-0.97
	2015	13,774	-1.35
	2016	12,436	-9.71
	2017	10,851	-12.75
	2018	9,337	-13.95
	2019	8,410	-9.93
	2020	7,481	-11.05
	2021	7,414	-0.90
		7,677	3.55
2022	서울	42,602	0.593
	부산	14,134	0.723
	대구	10,134	0.757
	인천	14,464	0.747
	광주	7,446	0.844
	울산	7,677	0.848
	세종	5,399	1.121
	전국	249,186	0.778

자료 : KOSIS, 인구동향조사. 2023. 9. 5. 인출.



[그림 3-1] 대전시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동향(2013-2022)

## 2) 모의 연령별 출산율<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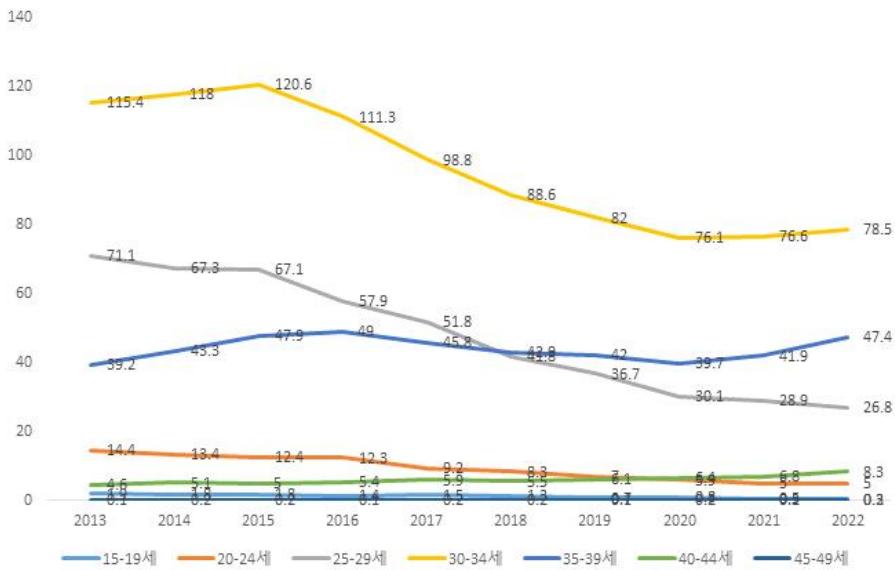
- 지난 10년간 대전시 모의 연령별 출산율 동향을 보면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 40-44세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 35-39세는 소폭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22년 기준 소폭 증가하였음. 2022년 기준 대전시 모의 연령별 출산율은 30-34세가 78.5로 가장 높았고, 35-39세 47.4, 25-29세 26.8, 40-44세 8.3, 20-29세 5.0, 15-19세 0.5, 45-49세 0.2로 나타났음.

[표 3-2] 대전시 모의 연령별 출산율 동향

구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대전	2013	1.9	14.4	71.1	115.4	39.2	4.6
	2014	1.8	13.4	67.3	118.0	43.3	5.1
	2015	1.8	12.4	67.1	120.6	47.9	5.0
	2016	1.4	12.3	57.9	111.3	49.0	5.4
	2017	1.5	9.2	51.8	98.8	45.8	5.9
	2018	1.3	8.3	41.8	88.6	42.9	5.5
	2019	0.7	7.0	36.7	82.0	42.0	6.1
	2020	0.8	5.9	30.1	76.1	39.7	6.4
	2021	0.5	5.0	28.9	76.6	41.9	6.8
서울	0.3	5.0	26.8	78.5	47.4	8.3	0.2
	0.2	1.4	9.9	53.5	43.4	8.7	0.2
	0.3	3.0	19.2	70.5	42.3	7.6	0.1
	0.2	3.3	23.6	75.4	39.7	6.9	0.1
	0.4	4.5	24.3	67.9	43.1	8.0	0.2
	0.4	4.1	28.8	80.6	45.1	7.4	0.2
	0.6	4.4	31.6	87.5	37.5	6.5	0.1
	0.4	6.1	40.5	112.6	55.7	9.3	0.1
	0.4	4.1	24.0	73.5	44.1	8.0	0.2
전국							

자료 : KOSIS, 인구동향조사. 2023. 9. 5. 인출.

8) 15 ~ 49세까지 모의 연령별 당해연도의 출생아 수를 당해 연령의 여성 인구로 나눈 비율을 1,000분비로 나타낸 지표



[그림 3-2] 대전시 모의 연령별 출산율 동향(2013-2022)

### 3) 조출생률<sup>9)</sup>

- 지난 10년간 대전시 조출생률은 합계출산율과 같이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2022년 소폭 증가하였음. 2013년 대전시 조출생률은 9.3, 2014년 9.2, 2015년 9.1에서 2018년 8.3으로 감소 폭이 커졌으며, 2017년 7.2, 2018년 6.3으로 큰 감소폭을 보이다가 2019년 5.7, 2020년, 2021년 5.1에서 2022년 5.3으로 매우 소폭 증가하였음.
- 정리하면, 2013년 이후 대전시 출산 현황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구체적으로 출생아 수는 2017년, 2018년, 2020년에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2021년과 2022년에 매우 소폭 증가하였음. 합계출산율은 지속해서 유사한 폭으로 감소하다가, 2021년과 2022년에 소폭 상승하였음. 조출생률 역시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2022년에만 매우 소폭 상승하였음.

9) 특정 인구집단의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의 총출생아 수를 당해연도의 연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지표

[표 3-3] 대전시 조출생률 동향

구분		조출생률
대전시	2013	9.3
	2014	9.2
	2015	9.1
	2016	8.3
	2017	7.2
	2018	6.3
	2019	5.7
	2020	5.1
	2021	5.1
	2022	5.3
서울		4.5
부산		4.3
대구		4.3
인천		4.9
광주		5.2
울산		4.9
세종		8.5
전국		4.9

자료 : KOSIS, 인구동향조사. 2023. 9. 5. 인출.

## 2. 대전시 영·유아 아동 인구 동향(0-7세)

### 1) 대전시 영·유아 아동 인구(0-7세)

- 지난 10년간 대전시 0-2세, 0-7세 영·유아 및 아동 인구 동향을 살펴 보면, 2013년 0-2세는 전체 인구의 2.91%, 0-7세는 7.90%에서 지속 해서 감소하여, 2019년 0-2세가 1.91%로 2% 미만으로 감소하였고, 2022년 현재 0-2세는 전체 인구의 1.62%, 0-7세는 5.31%였음.
- 2022년 현재 세종을 제외하고, 다른 특·광역시와 비교하면 대전시의 0-7세 영유아 및 아동 인구의 비율은 서울, 부산, 대구에 비해서 높고, 인구 규모가 유사한 광주와 비슷한 수준이었음.

[표 3-4] 대전시 영·유아 아동 인구 동향(0~7세)

(단위 : 명, %)

구분	0~2세		0~7세		전체 인구	
	명	%	명	%		
대전시	2013	44,615	2.91	121,032	7.90	1,532,811
	2014	43,117	2.81	119,478	7.80	1,531,809
	2015	40,761	2.68	114,650	7.55	1,518,775
	2016	39,431	2.60	111,588	7.37	1,514,370
	2017	36,369	2.42	107,025	7.12	1,502,227
	2018	32,207	2.16	100,868	6.77	1,489,936
	2019	28,241	1.91	93,726	6.35	1,474,870
	2020	25,138	1.72	86,379	5.90	1,463,882
	2021	23,650	1.63	80,753	5.56	1,452,251
	2022	23,497	1.62	76,791	5.31	1,446,072
서울		128,869	1.37	412,043	4.37	9,428,372
부산		44,234	1.33	154,225	4.65	3,317,812
대구		32,675	1.38	117,483	4.97	2,363,691
인천		47,004	1.58	157,358	5.30	2,967,314
광주		23,497	1.64	79,660	5.57	1,431,050
울산		17,779	1.60	63,162	5.69	1,110,663
세종		10,366	2.70	35,005	9.13	383,591
전국		786,567	1.53	2,649,793	5.15	51,439,038

자료 : 행정안전부 <https://jumin.mois.go.kr/ageStatMonth.do#none>. 2023. 9. 5. 인출.

- 1) 각 연도의 인구수는 12월 기준으로 추출하였음.
- 2) 각 연령 집단의 비율은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을 의미함.



[그림 3-3] 대전시 영·유아 아동 인구 동향(전체 인구 대비 비율: 0~7세)

## 2) 대전시 기초자치단체 영·유아 아동 인구 동향(0-7세)

- 지난 10년간 대전시 기초자치단체별 영·유아 아동 인구 동향은 아래 [표 3-5]부터 [표 3-9], [그림 3-4], [그림 3-5]와 같음.

**[표 3-5] 대전시 동구 영·유아 및 아동 인구 동향(0-7세)**

(단위 : 명, %)

구분	0-2세		0-7세		전체 인구
	명	%	명	%	
동구	2013	7,184	2.87	19,122	7.63
	2014	6,585	2.68	18,075	7.36
	2015	5,973	2.49	16,783	7.01
	2016	5,371	2.29	15,675	6.67
	2017	4,772	2.07	14,514	6.30
	2018	4,244	1.85	13,550	5.92
	2019	3,689	1.63	12,437	5.48
	2020	3,290	1.48	11,317	5.07
	2021	3,116	1.40	10,617	4.78
	2022	2,958	1.35	9,854	4.48

자료 : 행정안전부 <https://jumin.mois.go.kr/ageStatMonth.do#none>. 2023. 9. 5. 인출.

- 1) 각 연도의 인구수는 12월 기준으로 추출하였음.
- 2) 각 연령 집단의 비율은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을 의미함.

**[표 3-6] 대전시 중구 영·유아 및 아동 인구 동향(0-7세)**

(단위 : 명, %)

구분	0-2세		0-7세		전체 인구
	명	%	명	%	
중구	2013	6,831	2.58	18,807	7.10
	2014	6,455	2.47	18,106	6.93
	2015	5,863	2.29	17,024	6.65
	2016	5,472	2.17	16,065	6.36
	2017	4,860	1.95	15,026	6.04
	2018	4,206	1.72	13,802	5.65
	2019	3,673	1.53	12,582	5.23
	2020	3,140	1.33	11,166	4.74
	2021	2,923	1.27	10,192	4.42
	2022	2,850	1.25	9,663	4.25

자료 : 행정안전부 <https://jumin.mois.go.kr/ageStatMonth.do#none>. 2023. 9. 5. 인출.

- 1) 각 연도의 인구수는 12월 기준으로 추출하였음.
- 2) 각 연령 집단의 비율은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을 의미함.

[표 3-7] 대전시 서구 영·유아 및 아동 인구 동향(0-7세)

(단위 : 명, %)

구분	0-2세		0-7세		전체 인구	
	명	%	명	%		
서구	2013	13,863	2.78	37,289	7.47	498,917
	2014	13,424	2.71	36,890	7.44	496,132
	2015	12,780	2.60	35,623	7.26	490,859
	2016	12,588	2.56	35,407	7.21	491,011
	2017	11,694	2.40	34,326	7.04	487,448
	2018	10,489	2.16	32,791	6.77	484,663
	2019	9,376	1.95	31,040	6.45	481,222
	2020	8,319	1.74	28,629	5.99	477,880
	2021	7,707	1.63	26,793	5.66	473,365
	2022	7,693	1.64	25,433	5.41	470,374

자료 : 행정안전부 <https://jumin.mois.go.kr/ageStatMonth.do#none>. 2023. 9. 5. 인출.

- 1) 각 연도의 인구수는 12월 기준으로 추출하였음.
- 2) 각 연령 집단의 비율은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을 의미함.

[표 3-8] 대전시 유성구 영·유아 및 아동 인구 동향(0-7세)

(단위 : 명, %)

구분	0-2세		0-7세		전체 인구	
	명	%	명	%		
유성구	2013	11,321	3.61	31,250	9.95	313,968
	2014	11,572	3.53	32,348	9.88	327,461
	2015	11,598	3.46	32,269	9.62	335,312
	2016	11,804	3.44	32,291	9.41	343,222
	2017	11,399	3.27	32,021	9.19	348,428
	2018	10,145	2.90	30,670	8.77	349,790
	2019	8,832	2.53	28,667	8.21	349,373
	2020	7,908	2.25	26,838	7.65	351,047
	2021	7,488	2.13	25,319	7.21	351,277
	2022	7,644	2.15	24,489	6.88	356,093

자료 : 행정안전부 <https://jumin.mois.go.kr/ageStatMonth.do#none>. 2023. 9. 5. 인출.

- 1) 각 연도의 인구수는 12월 기준으로 추출하였음.
- 2) 각 연령 집단의 비율은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을 의미함.

[표 3-9] 대전시 대덕구 영·유아 및 아동 인구 현황(0~7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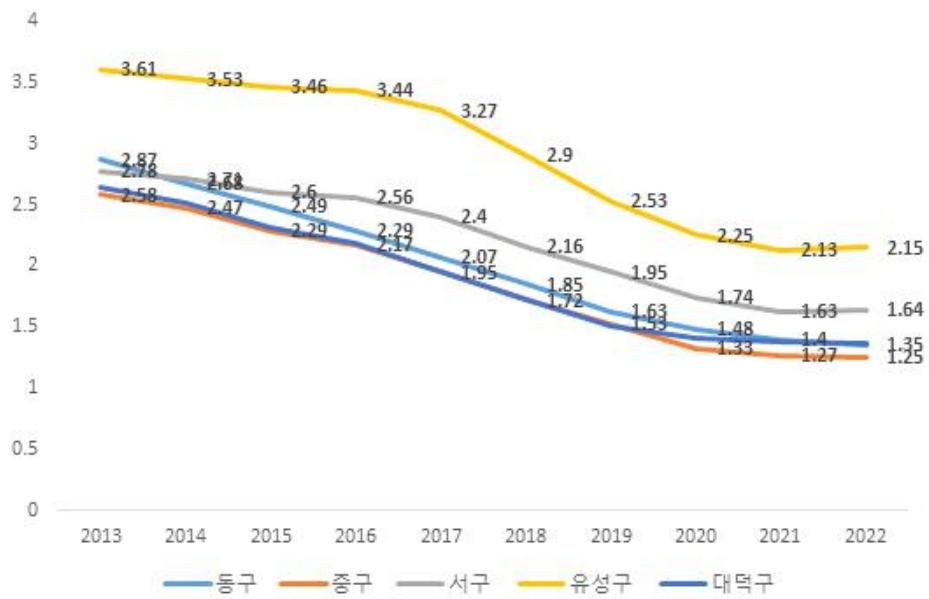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0~2세		0~7세		전체 인구	
	명	%	명	%		
대덕구	2013	5,416	2.65	14,564	7.13	204,360
	2014	5,081	2.52	14,059	6.98	201,558
	2015	4,547	2.31	12,951	6.58	196,839
	2016	4,196	2.18	12,150	6.31	192,688
	2017	3,644	1.95	11,138	5.96	186,902
	2018	3,123	1.72	10,055	5.52	181,991
	2019	2,671	1.51	9,000	5.08	177,031
	2020	2,481	1.41	8,429	4.78	176,384
	2021	2,416	1.38	7,832	4.47	175,046
	2022	2,352	1.36	7,352	4.26	172,7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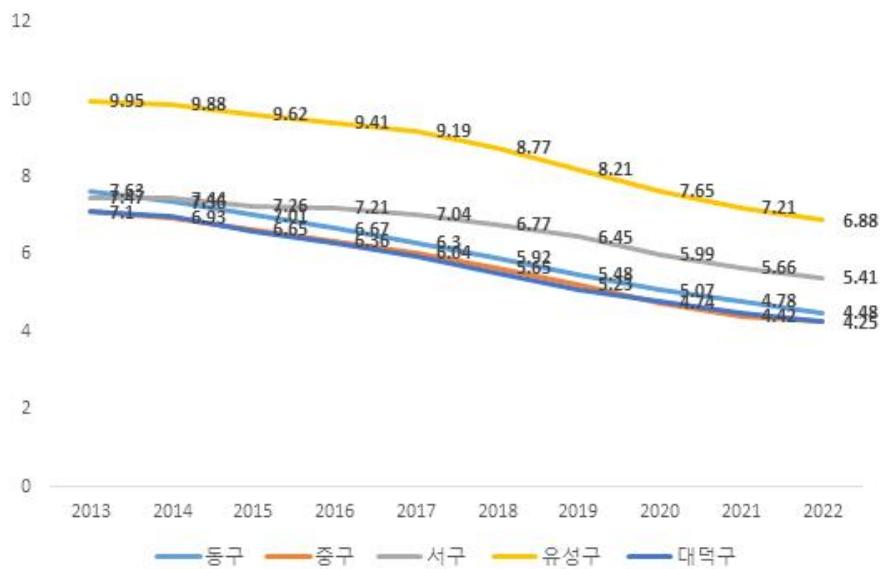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 <https://jumin.mois.go.kr/ageStatMonth.do#none>. 2023. 9. 5. 인출.

- 1) 각 연도의 인구수는 12월 기준으로 추출하였음.
- 2) 각 연령 집단의 비율은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을 의미함.

- 0~2세, 0~7세의 절대 인구 수는 서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유성구, 동구와 중구가 유사하였으며, 대덕구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0년간의 동향은 0~2세, 0~7세 모두 유사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0~2세, 0~7세 모두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유성구가 가장 높았으며, 서구와 동구가 유사하였고, 중구와 대덕구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음.
- 0~2세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2013년 유성구 3.61%, 동구 2.87%, 서구 2.78%, 대덕구 2.65%였으며, 2022년까지 지속해서 감소하여 2022년 유성구 2.15%, 서구 1.64%, 대덕구 1.36%, 동구 1.35%, 중구 1.25%로 중구의 비율이 가장 낮았음.
- 0~7세의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2013년 유성구 9.95%, 동구 7.63%, 서구 7.47%, 대덕구 7.13%에서 2022년 유성구 6.88%, 서구 5.41%, 동구 4.48%, 중구 4.25%, 대덕구 4.26%로 나타나, 동구가 서구보다 0~7세 인구의 비율 폭이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3-4] 대전시 자치구별 0-2세 인구 동향(전체 인구 대비 비율)



[그림 3-5] 대전시 자치구별 0-7세 인구 동향(전체 인구 대비 비율)

## 2절.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현황

### 1.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개요

- 앞서 2장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기존의 출산 지원금이 확대된 지원 정책으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2022년 2월 17일 일부 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음.
- 2021년까지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80만원 일시 금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지원금”과, 셋째 자녀 이상 양육 부모 혹은 보호자에게 월 5만원, 최고 60만원을 생후 24개월 최대 12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이 시행 되었고,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부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으로 통합 시행되고 있음.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은 0-2세(생후 36개월이하) 대전시 거주 영·유아이며,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 자이면 신청이 가능함. 지원 기간은 출생 후 36개월까지로 매월 영·유아의 계좌로 3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 영·유아 출생일(혹은 입양한 달)로부터 60 이내 신청해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자치구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출생 및 전입 신고 시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3-10]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개요

구분	내용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대전시 거주 생후 36개월 이내 영유아<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019년 2월생부터 지급, 지원조건 부합자</li><li>·(지원조건)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li></ul></li></ul>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추생후 36개월까지 매월 30만 원 지급</li> <li>- 단 2022.1.1.이전 출생자(2019~2021년생)는 2022.1.1.부터 생후 36개월 되는 달까지 지원</li> </ul>							
지원 방식	·영유아의 계좌로 현금 이체 (매월 25일)							
신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의 부 또는 모가 자치구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출생 및 전입 신고 시 신청</li> <li>-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li> </ul>							
지급절차	<table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신청접수 (부모)</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자격결정 (행정복지센터)</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수당지급 (자치구)</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결과보고 (자치구→시)</td> </tr> </table>	신청접수 (부모)	»	자격결정 (행정복지센터)	»	수당지급 (자치구)	»	결과보고 (자치구→시)
신청접수 (부모)	»	자격결정 (행정복지센터)	»	수당지급 (자치구)	»	결과보고 (자치구→시)		

자료: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가족돌봄과 내부자료

## 2.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현황<sup>10)</sup>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실지급 인원의 현황을 2022년 기준 월별로 살펴 보면, 다음 [표 3-12]와 같음.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실지급 인원은 월별로 약간 변동이 있으며, 12월 기준으로 대전시 22,241명, 동구 2,827명, 중구 2,738명, 서구 7,310 명, 유성구 7,102명, 대덕구 2,264명이었음.
- 2022년 12월 0-2세 인구 기준 수급률은 대전시 전체는 94.65%, 동구 95.57%, 중구 96.07%, 서구 95.02%, 유성구 92.91%, 대덕구 96.26%로 자치구별로는 대덕구가 가장 높았고, 유성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10)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현황은 대전시 아동보육과 내부자료를 정리한 것임.

[표 3-12]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실지급 인원(2022년)

(단위 : 명, %)

구분	대전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1월	22,291	2,789	2,763	7,253	7,208	2,278
2월	22,427	2,901	2,714	7,327	7,186	2,299
3월	22,239	2,853	2,704	7,247	7,158	2,277
4월	22,248	2,831	2,717	7,237	7,198	2,265
5월	22,146	2,848	2,666	7,240	7,145	2,247
6월	22,182	2,858	2,723	7,162	7,194	2,245
7월	22,028	2,872	2,763	7,114	7,028	2,251
8월	22,110	2,873	2,781	7,159	7,029	2,268
9월	22,257	2,870	2,769	7,270	7,067	2,281
10월	22,322	2,873	2,764	7,313	7,099	2,273
11월	22,268	2,856	2,752	7,326	7,056	2,278
12월	22,241	2,827	2,738	7,310	7,102	2,264
수급률 <sup>1)</sup>	94.65	95.57	96.07	95.2	92.91	96.26

자료 : 대전시 아동보육과 내부자료

1) 수급률은 대전시 아동보육과 내부자료, 행정안전부 인구동향조사 12월 기준으로 계산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효과성 탐색

- 1절. 조사 개요
- 2절. 조사 결과

**4장**



## 4장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효과성 탐색

### 1절 조사 개요

#### 1. 조사 개요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정부 정책 분류 체계에서는 출산지원금으로 분류되지만, 소득, 출생순위 기준 없이, 연령(0-2세)만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 수당의 성격을 지님.
- 이러한 맥락에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효과 탐색은 출산지원금뿐만 아니라 보편적 수당 즉, 아동수당 관련 연구들에서 논의한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영·유아 및 아동 대상 현금지원인 아동수당 등의 지원은 직접적 혹은 일차적으로 대상 가구의 소득 증가, 양육비 경감, 양육비 지출, 간접적 혹은 이차적으로는 빈곤 완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출산율 등에 영향을 미치고,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은 직접적으로 출산율 향상, 출생아 수 증가를 목표로 하는 정책임.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출산지원금 정책으로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출산율과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본 고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양육 부담 경감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음.
- 첫째,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2022년 1월부터 약 1년 7개월 정도 시행된 제도로 출산 관련 지표 즉,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 조출생률의 변화와 관계를 실증하기 어려움. 또한, 2022년 시행된 제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인 2022년 이전 출생 및 2022년 출생 영·유아 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인과 관계에서 원인의 시간적 선행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
- 둘째,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명시적 목적이 인구 구성 균형과 질적 향

상<sup>11)</sup> 즉, 출산율 제고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차적인 목적은 아동수당과 같이 영·유아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감소에 있다고 할 수 있음. 다시 말해서, 아동수당의 직접적인 효과가 대상 가구소득 증가, 양육비 경감, 양육비 지출 등 양육 부담 경감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역시 현금지원을 통해 대상 가구의 양육 비용 지출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 일차적인 효과라 할 수 있음. 이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목적이 아동 가구에 대한 가구가 보조로써 국가의 책임을 실현하는 사회보장에 있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함(김보름, 2020).

- 마지막으로 영·유아 및 아동의 복지 증진의 목적 즉, 현금지원이 영·유아 및 아동의 성장 환경, 생존과 발달에 영향을 미쳐 이들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고에서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 양육 부담 경감에 미치는 영향 구체적으로는 자녀 양육비와 자녀 양육비 부담(가구 가치분 소득)에서 자녀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음.
-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조사 내용(변수)은 아래 2항 조사 설계에서 제시하였음.

## 2. 조사 설계

### 1) 조사 대상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효과성을 탐색하기 위해 본 고는 대전시 거주 0-7세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효과성을 종단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교군을 설정하고자,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대상인 0-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와 함께 아동수당 대상 연령인 3-7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음.
- 20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대전시 0-7세 아동 즉, 모집단 수는

---

11)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121,032명이며, 그중 0-2세 36.9%(44,615명), 3-7세 63.1%(76,471)임. 비례표본본추출은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 연령 집단을 과소 표집할 가능성이 있어 비비례할당표본출을 활용하였음. 조사는 집단의 비율이 약 50%가 될 수 있도록 300명의 표본조사를 계획하였음.

- 실재 설문조사는 전문 조사 업체에 의뢰하여 2023년 8월 7일~8월 31일까지 약 4주간 개별 방문조사로 진행되었고, 3-7세 집단의 사례 수가 부족하여 약 1주간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295사례가 분석에 포함되었음. 설문 내용은 전반적인 양육현황을 파악하고자 영·유아 및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주양육자, 배우자와의 양육분담 비율, 양육 스트레스, 자녀 양육비, 양육지원정책 경험 등 자녀 양육 관련 사항과 대전형 양육수당 관련 문항 등이 포함되었음. 그리고 양육 부담과 관련에 있다고 제시되는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등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포함되었음. 자세한 변수 정의 및 측정의 내용은 아래에 3)목에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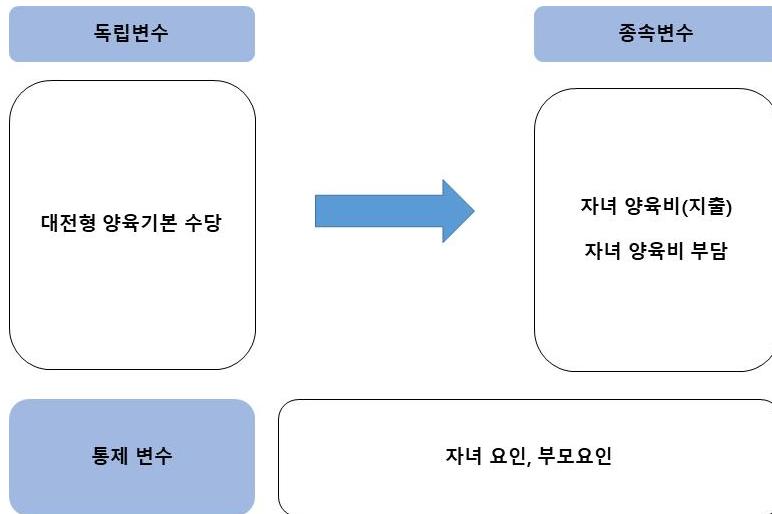
## 2) 분석 방법

- 본 고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효과성을 탐색하기 위해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 대상 여부에 따른 자녀 양육 특성 및 자녀 관련 인식의 차이와 대전형양육기본수당 수급 여부를 독립변수로 자녀 양육비와 자녀 양육 부담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음.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 여부에 따른 자녀 양육 특성 차이 분석의 내용은 [표 4-1], 다중회귀 분석의 연구 모형은 아래 [그림 4-1]과 같음.
-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는 정책 대상 집단과 정책 비대상 집단의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서 준실험설계 혹은 비실험설계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0-2세 연령 기준만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 연령 내에서 정책 대상과 비대상을 구분할 수 없고,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정책 대상의 변화를 포착하기 어려워 종단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기 어려움.
- 또한, 대전 외 지역의 0-2세를 비교(통제)집단으로 설정할 경우, 해당

지역의 출산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장인수·정찬우, 2022). 이러한 이유로 본 고는 대전시 내에서 아동수당 대상과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 간 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효과성을 탐색하고자 하였음.

[표 4-1] 자녀 양육 특성 차이 분석 내용

구분	내용
자녀 양육 특성	주양육자, 자녀 양육 시간, 양육 분담 만족도
자녀 관련 인식	자녀에 대한 인식, 이상적인 자녀 수, 자녀가치, 양육스트레스



[그림 4-1] 연구 모형

### 3) 변수 정의 및 측정

#### (1) 독립변수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효과성 탐색을 목적으로 하는 본 고의 독립변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수령 여부의 이항 변수임. 다만, 두 자녀 이상 응답자 중 0-2세 자녀가 있는 경우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으로 처리하였음.

## (2) 종속변수

- 본 고의 종속변수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양육비 지출, 자녀 양육비 부담임.
- 자녀 양육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 지난 3개월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월평균에 대한 문항을 참고하여, 보육비, 공교육비, 돌봄비용, 식비 등 9가지 항목에 대한 지출 비용을 첫째, 다섯째 자녀까지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음. 자녀 양육비는 개별 응답자의 자녀 양육비 지출 총합을 자녀 수로 나누어 평균으로 추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녀 양육비 부담은 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자녀 양육비로 계산하였음.

[표 4-2] 변수 정의 및 측정

구분	변수명		정의 및 측정 방법
독립 변수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1, 비대상=0
종속 변수	자녀 양육비		자녀 양육비=[자녀별(어린이집/유치원+공교육비+사교육비+돌봄비용+식비+양육용품비+보건·의료비+문화생활비+기타)총합/자녀 수]
	자녀양육비부담		자녀양육비/가처분소득 × 100
통제 변수	자녀 요인	자녀 수	가구의 총 자녀 수(1명=0, 2명=1로 변환)
		첫째 자녀의 연령	2023-첫째 자녀의 출생연도
	부모 요인	성별	여성=1, 남성=0
		연령	2023-응답자의 출생연도
		교육수준	무학=1 ~ 대학원 재학 이상=7 (고등학교=0, 전문대졸=1, 4년제 이상=2로 변환)
		경제활동	경제활동 참여=1, 경제활동 미참여=0
		맞벌이	맞벌이=1, 외벌이=0
		가구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여 모든 가구원의 소득의 합산에서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응답
		가구원 수	총 가구원 수
		주거 소유 형태	자가=1, 전세 외=0

※ 각 변수 및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기타 조사 문항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설문조사지 참조

### (3) 통제변수

- 통제변수는 종속변수인 자녀 양육비, 자녀 양육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설정하였음. 자녀 요인으로는 자녀 수, 첫째 자녀의 연령, 부모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참여,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가구원 수, 자가 소유를 포함하였음(김보름, 2021; 김이래, 2021).
- 구체적으로 응답자 성별의 경우 여성을 1, 남성을 0으로, 연령은 연속 변수로 측정하였고, 교육수준은 무학 1부터 대학원 이상을 7로 측정한 것을 고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더미 변수 처리하였음. 경제활동상태는 예를 1, 아니오를 0으로, 맞벌이 여부는 맞벌이를 1, 외벌이를 0으로 가구소득은 월평균 실수령 가구소득으로 측정하였음. 가구원 수는 조사 대상 가구의 총 가구원 수, 주거 소유 형태는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 기타로 조사하여 자가를 1, 전세 외를 0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였음.

### (4) 자녀 양육 특성

- 자녀 양육비를 제외한 자녀 양육 특성에는 주양육자, 자녀 양육 시간, 양육시간 분담, 양육 분담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자녀 관련 태도로서 자녀 출산 인식 및 이상적인 자녀 수, 자녀 가치, 양육스트레스와 둘째 이상 출산에 중요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영·유아 및 아동 관련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 즉, 양육정책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었음.
- 주양육자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보육패널조사>에서 주양육자에 대해 질문하는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주양육자의 항목으로 어머니, 아버지, 자녀의 조부모, 기타 친인척, 공공아이돌보미, 민간돌보미, 기타를 포함하였음.
- 자녀 양육시간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 양육(돌봄) 시간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응답자 본인과 배우자의 평일과 주말 각각 공동 양육시 간까지 포함하여 조사 대상자와 배우자의 하루 양육(돌봄) 시간과 분을 구분 측정하여, 분으로 환산하였음. 다음

으로 동일한 조사의 자녀 양육 분담 비율을 0-100%까지 구분하여 11개 항목으로 측정하는 문항을 활용하였고, 현재 배우자와 자녀 양육 돌봄 분담에 만족하는 정도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 ‘매우 만족 한다’ 5의 5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을 활용하였음.

- 자녀 관련 태도 중 자녀(출산)에 대한 인식과 이상적인 자녀 수는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 “본인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 보다 나을 것이다’, ‘없어도 무관하다’, ‘모르겠다’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질문을 활용하였고, 이상적인 자녀 수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개방 형으로 혹은 ‘모르겠다’에 응답하는 질문을 활용하였음.
- 자녀 가치는 이삼식 외(2005)가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 자녀 가치 척도 9개 문항 중 1개 문항을 제외한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보육패널조사> 1차 조사에 사용한 8개 문항을 활용 하였음.
- 둘째 이상 출산에 고려할 사항은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의 “사람들이 출산을 결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을 조사 대상 모두가 자녀가 있음을 고려하여 둘째 이상 자녀 출산으로 질문을 수정하여 활용하였음. 항목은 가정의 경제적 여건, 본인의 안정 된 직업 등 8가지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다’ 5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강희경(1997)이 개발한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12문항 중 1개 문항을 제외한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보육패널조사> 1차 조사의 11개 문항을 활용하였음.
- 마지막으로 양육 정책에 대한 인식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보육패널조사>에서 아동 수당, 영아 수당(현 부모급여) 등 7가지 현금 지원 정책과 첫만남 이용권,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5가지 현물/바우처 지원 정책에 대해 이용여부, 5점 척도 만족도, 5점 척도 중요도를 질문하는 문항을 활용하였음.

## (5) 대전형 양육기본 수당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관련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기본수당 지급 기간, 양육기본수당 지출 항목 및 지출액, 중요도와 만족도, 도입에 대한 인식, 대상 연령 조정에 대한 의견 조사에 포함하였음.
- 먼저, 양육수당 수급 기간 1-3개월, 4-6개월, 7-9개월, 10-12개월, 13개월 이상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고, 양육기본수당 지출 항목은 식비, 외식비, 교육비, 양육물품구입비 보건·의료비, 문화생활비 등 12개 항목에 대해 지출 항목 5순위와 각 항목의 지출액을 총액 30만원을 기준으로, 0-2세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총액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음.
- 다음으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조사하였음.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 자체 예산 인지 여부는 ‘예’ 1, ‘아니오’ 2로,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 도입에 대한 인식은 ‘매우 잘못 됐다’ 1에서 ‘매우 잘했다’ 5의 5점 척도로 조사하였음.
- 마지막으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 연령에 대한 의견은 아동수당 대상 연령, 부모급여 대상 연령에 대한 설명을 먼저 제시하고, 대전형 양육기본수당과 합산하여 0-1세가 받는 급여의 최대금액, 2세가 받는 급여 최대금액, 3-7세가 받는 금액을 제시한 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대상 연령을 조정할 경우 선호하는 연령 구간에 대해 조사하였음.

## 2절 조사 결과

###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 여부

- 조사 대상자(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 여부는 다음 [표4-3]과 같음.

[표 4-3]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평균)	비율(표준편차)
성별	여	216	73.22
	남	79	26.78
연령		(34.77)	(4.02)
학력	고등학교 졸업	51	17.29
	전문대 졸업	151	51.19
	4년제 대학 졸업	92	31.19
	대학원 재학 이상	1	0.34
경제활동	예	171	57.97
	아니오	124	42.03
직종	사무직 노동자	100	58.48
	생산직 노동자	20	11.70
	자영업자	40	23.39
	기타	11	6.43
종사상 지위	상용직	113	66.08
	임시직	10	5.85
	일용직	1	0.58
	자영업자	37	21.64
	무급가족종사자	10	5.85
맞벌이	맞벌이	126	42.71
	외벌이	169	57.29
가구소득(월)		(455.91)	(120.39)
가구원 수		(3.47)	(0.55)
주거소유형태	자가	81	27.46
	전세	141	47.8
	보증금 있는 월세	65	22.03
	무상	8	2.71
대전형양육기본	예	156	52.88
	아니오	139	47.12

※ 혼인상태는 조사 대상자 모두 기혼으로 제시하지 않았음.

- 성별은 여성이 73.22%, 남성이 26.78%로 여성이 더 많았고, 연령은 평균 34.77세( $SD=4.02$ ), 최소 25세, 최대 44세로 나타남. 학력 전문 대 졸업이 51.19%, 4년제 대학 졸업 31.19%, 고등학교 졸업 17.29%였음. 경제활동 참여자는 57.79%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약간 높았음. 직종은 사무직이 58.48%, 자영업자 23.39%, 생산직 노동자 11.70%, 기타 6.43%였으며, 기타는 서비스업, 아르바이트, 웹툰작가, 프리랜서가 있었음.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 66.08%, 자영업자 21.64%, 무급가족종사자 및 기타와 임시직이 각 5.85%였음. 맞벌이 가구는 42.71%, 외벌이 가구는 57.29%로 외벌이 가구의 비율이 약간 높았음. 가구 월소득은 평균 455.91만원( $SD=120.39$ , 최소 250만원, 최대 860만원)으로 월소득 격차가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구원 수는 평균 3.47명( $SD=0.55$ , 최소 3명, 최대 5명)이었음. 주거소유형태는 자가 27.46%, 전세 47.8%, 보증부 월세 22.03%, 무상 2.71%로 나타남. 마지막으로 조사 대상자 중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은 156명(52.88%), 비대상은 139명(47.12%)이었음.

## 2) 자녀(영·유아) 및 양육 특성

### (1) 자녀 특성

- 조사 대상자 가구의 자녀 특성은 다음 [표 4-4]와 같음.
- 먼저, 조사 대상 가구의 자녀 수는 1자녀 165명(55.93%), 2자녀 121명(41.02%), 3자녀 9명(3.05%)으로 나타났음. 성별은 첫째 자녀는 여아 153명, 남아 142명, 둘째 자녀는 여아 68명, 남아 62명, 셋째 자녀는 여아 3명, 남아 6명이었음.
- 자녀의 평균 연령은 첫째 자녀 3.38세( $SD=2.12$ , 최소 0세, 최대 7세)였고, 둘째 자녀 1.96세( $SD=1.71$ , 최소 0세, 최대 6세), 셋째 자녀 1.11세( $SD=1.26$ , 최소 0세, 최대 4세)였음.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여부는 첫째 자녀는 이용 204명(69.15%), 미이용 70명(23.73%), 해당 없음 21명(7.12%), 둘째 자녀는 이용 81명(61.31%), 미이용 49명(37.69%), 셋째 자녀 이용 5명(55.56%), 미이용 4명(44.44%)이었음.

[표 4-4] 자녀 특성

구분		빈도(평균)	비율(표준편차)
총 자녀 수	1명	165	55.93
	2명	121	41.02
	3명	9	3.05
성별	첫째	여	153
		남	142
	둘째	여	68
		남	62
	셋째	여	3
		남	6
연령	첫째(n=295)	(3.38)	(2.12)
	둘째(n=130)	(1.96)	(1.71)
	셋째(n=9)	(1.11)	(1.26)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첫째	이용	204
		미이용	70
		해당없음	21
	둘째	이용	81
		미이용	49
	셋째	이용	5
		미이용	4

## (2) 자녀 양육 관련 특성

- 자녀 양육과 관련된 내용은 주양육자, 응답자와 배우자의 하루 양육(돌봄) 시간(평일, 주말), 배우자와의 양육 분담 비율, 배우자와의 양육 분담 만족도로 조사 대상 전체의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5]와 같음.
- 주 양육자는 어머니 87.46%, 조부모 10.85%, 아버지 1.02%, 민간돌보미 0.68%로 주 양육자는 대부분 어머니였음. 자녀 양육 시간은 응답자 본인 평일 373.86분(SD=274.69), 주말 508.27분(SD=272.17)이었고, 배우자는 평일 236.37분(SD=23.137), 주말 406.95분(SD=304.50)으로 응답자 본인이 평일과 주말에 약 100분 정도 더 많이 양육에 참여하고 있었고, 사례 간 격차가 존재하고 있었음.

[표 4-5] 자녀 양육 특성

구분		빈도(평균)	비율(표준편차)
주 양육자	어미니	258	87.46
	아버지	3	1.02
	조부모	32	10.85
	민간돌보미	2	0.68
자녀 양육 시간	본인 평일	(373.86)	(274.69)
	본인 주말	(508.27)	(272.17)
	배우자 평일	(236.37)	(231.37)
	배우자 주말	(406.95)	(304.50)
양육 시간 분담	본인 0%, 배우자 100%	2	0.68
	본인 10%, 배우자 90%	19	6.44
	본인 20%, 배우자 80%	41	13.9
	본인 30%, 배우자 70%	12	4.07
	본인 40%, 배우자 60%	5	1.69
	본인 50%, 배우자 50%	3	1.02
	본인 60%, 배우자 40%	50	16.95
	본인 70%, 배우자 30%	48	16.27
	본인 80%, 배우자 20%	86	29.15
	본인 90%, 배우자 10%	26	8.81
양육 분담 만족도	본인 100%, 배우자 0%	3	1.02
	만족하지 않는다	7	2.37
	만족하지 않는다	74	25.08
	보통이다	96	32.54
	만족한다	116	39.32
	매우 만족한다	2	0.68

- 양육 시간 분담 비율의 경우 응답자 본인 80%, 배우자 30%가 29.15%로 가장 많았고, 본인 60%, 배우자 40% 16.95%, 본인 70%, 배우자 30%가 16.27% 등으로 약 63%의 응답자가 본인이 더 많이 양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양육 분담 만족도는 ‘만족한다’ 39.32%, ‘보통이다’ 32.54%, ‘만족하지 않는다’ 25.08%로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가 다수였음.

#### (4) 자녀 관련 인식

- 자녀 관련 인식에는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 이상적인 자녀 수, 자녀 가치, 양육스트레스가 포함되었음. 먼저 조사 대상 전체는 자녀가 있어

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꼭 있어야 한다’ 42.71%,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35.25%, ‘없어도 무관하다’ 18%로 나타나, 조사 대상자들은 대체로 자녀 출산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상적인 자녀 수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107명을 제외한 188명이 중 이상적인 자녀 수가 2명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1.28%로 가장 많았고, 1명 23.94%, 3명 3.72%로, 2명 정도가 이상적인 자녀 수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다수였음.
- 자녀 가치 8문항의 평균은 3.35점( $SD=0.53$ )으로 보통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나, 자녀 출산과 양육에 있어 부모 역할 수행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양육스트레스는 11문항 평균 2.03( $SD=0.49$ )으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 수준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6] 자녀 관련 인식 / 자녀 가치 / 양육스트레스

구분		빈도(평균)	비율(표준편차)
자녀에 대한 인식	꼭 있어야 한다	126	42.71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104	35.25
	없어도 무관하다	18	6.10
	모르겠다	47	15.93
이상적인 자녀 수 (n=188)	1명	45	23.94
	2명	134	71.28
	3명	7	3.72
	4명	2	1.06
	이상적 자녀 수 평균	(1.81)	(0.54)
	자녀 가치(8문항 평균)	(3.35)	(0.53)
양육 스트레스(11문항 평균)		(2.03)	(0.49)

- 다음으로 둘째 자녀 이상 출산에 중요한 항목들에 대해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 74.58%, 가정의 경제적 여건 74.92%, 주거 여건 68.81%, 배우자의 안정된 직업 64.75%, 보육/양육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정책 60.68%, 본인의 안

정된 직업 50.17%, 육아 휴직, 출산휴가 이용 가능성 49.83%, 배우자 와의 육아 분담 43.73%로 나타나, 상대적으로는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 가정의 경제적 여건, 주거 여건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다만, 모든 항목에서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비율이 매우 높아 대상자들은 자녀 출산에 제시된 모든 사항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표 4-7] 둘째 이상 자녀 출산에 중요 사항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단위 : 빈도, %
	-	-	4	70	221	
가정의 경제적 여건	-	-	1.36	23.73	74.92	
	-	-	29	118	148	
본인의 안정된 직업	-	-	9.83	40.00	50.17	
	-	1	29	74	191	
배우자의 안정된 직업	-	0.34	9.83	25.08	64.75	
	-	-	20	72	203	
주거 여건	-	-	6.78	24.41	68.81	
	-	-	20	72	203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	-	-	9	66	220	
	-	-	3.05	22.37	74.58	
배우자와의 육아 분담	-	1	60	105	129	
	-	0.34	20.34	35.59	43.73	
보육/양육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정책	-	-	22	94	179	
	-	-	7.46	31.86	60.68	
육아 휴직, 출산 휴가 이용 가능성	-	-	28	120	147	
	-	-	9.49	40.68	49.83	

### (5) 양육 정책 인식

- 현재의 영·유아 관련 지원정책 중 현금지원에 대한 이용 현황과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8]과 같음. 중요도의 경우 모든 조사 대상자, 만족도의 경우 해당 정책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임.
- 먼저, 각 현금지원의 중요도는 모두 4점 즉, 대체로 중요 이상으로. 매우 중요함에 가까운 항목으로 부모 급여가 평균 4.69점( $SD=0.59$ ), 아동수당 4.55점( $SD=0.71$ ), 종일제 아이돌봄 4.40점( $SD=0.57$ ), 가정양

육수당 4.33점(SD=0.7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4.28(SD=0.70), 출산 급여 4.25점(SD=0.67), 보육료 4.22점(SD=0.86), 근로장려세제, 장려 세제는 4.00점이었음. 즉 조사 대상자들은 모든 현금지원 정책이 대체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현금지원의 만족도는 사례 수가 매우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50 사례 미만 제외), 부모급여 만족도는 3.83점(SD=0.57)으로 만족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고, 아동수당 3.66점(SD=0.71), 출산급여 3.27점 (SD=0.7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3.24점(SD=0.75)점 등으로 나타났음. 대체로 현금지원의 만족도는 보통 이상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표 4-8] 양육 관련 현금 지원 정책 이용과 인식

구분	이용여부			중요도		만족도	
	이용	미이용	해당 없음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아동수당	283	13	-	4.55	0.71	3.66	0.71
	95.59	4.41	-				
부모급여	127	13	155	4.69	0.59	3.88	0.57
	43.05	4.41	52.54				
보육료	30	110	155	4.22	0.86	3.83	0.65
	10.17	37.29	52.54				
종일제 아이돌봄	25	115	155	4.40	0.57	3.88	0.33
	8.47	38.98	52.54				
가정양육수당	41	218	36	4.33	0.75	3.51	0.64
	13.90	73.90	12.20				
출산급여	73	107	115	4.25	0.67	3.27	0.71
	24.75	36.27	38.9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24	171	-	4.28	0.70	3.24	0.75
	42.03	57.97	-				
근로장려세제	17	24	254	4.00	0.67	4.00	0.35
	5.76	8.14	86.10				
자녀장려세제	2	-	293	4.00	0.68	3.5	0.70
	0.68	-	99.32				

- 다음으로 현물/바우처 지원의 중요도 분석 결과 첫만남이용권은 4.74 점(SD=0.5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4.71점(SD=0.48)으로

매우 중요함에 가까웠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4.59점( $SD=0.54$ ), 아이돌봄지원 4.56점( $SD=0.61$ ), 기저귀/조제분유지원 4.28점( $SD=0.70$ )으로 대체로 중요 이상이었음.

- 사례 수가 적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제외하고, 다른 현물/바우처 지원 정책의 만족도는 3.77점(첫만남 이용권)에서 3.34점(아이돌봄지원)사이로 보통 이상의 수준이었음.

**[표 4-9] 양육 관련 현물/바우처 지원 정책 이용과 인식**

구분	이용여부			중요도		만족도	
	이용	미이용	해당 없음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첫만남 이용권	276 93.56	2 0.68	17 5.76	4.74	0.51	3.77	0.68
건강보험	193	102	-	4.71	0.48	3.53	0.71
임신·출산 진료비	65.42	34.58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201 68.14	90 30.51	4 1.36	4.59	0.54	3.55	0.73
아이돌봄지원	116 39.32	178 60.34	1 0.34	4.56	0.61	3.34	0.70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30 10.71	40 13.56	225 76.27	4.28	0.70	3.30	0.60

#### (6) 자녀 양육비

- 조사 대상 가구의 자녀 양육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10]과 같음.
- 총양육비 평균은 93.83만원( $SD=45.89$ )이었고, 자녀당 양육비는 평균 64.84만원( $SD=22.94$ )으로 나타났음. 항목별로는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식비가 평균 21.60만원( $SD=14.60$ )으로 가장 많았고, 양육용품비 17.96만원( $SD=17.28$ ), 문화생활비 9.42만원( $SD=12.86$ ), 사교육비 8.51만원( $SD=13.65$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4-10] 자녀 양육비

구분		평균	표준편차
항목별	어린이집/ 유치원	9.88	10.52
	공교육비	0.17	1.19
	사교육비	8.51	13.65
	돌봄비용	2.05	12.46
	식비	21.60	14.60
	양육용품비	17.96	17.28
	보건·의료비	3.19	3.51
	문화생활비	9.42	12.86
	기타	25.98	11.59
	첫째 자녀(n=295)	66.27	23.44
자녀별	둘째 자녀(n=130)	58.20	21.81
	셋째 자녀(n=9)	62.44	34.35
	총 양육비	93.83	45.89
자녀 당 양육비(총 양육비/자녀 수)		64.84	22.94

### 3)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현황

- 앞서 언급했듯이, 조사 대상자 중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은 156명 (52.88%)었고, 이들의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수령 기간은 13개월 이상이 34.62%, 10~12개월이 23.72%, 4~6개월 18.59%, 7~9개월 12.82%, 1~3개월이 10.26%였음.

[표 4-11]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수령 기간

구분		빈도(평균)	비율(표준편차)
수령 기간	1~3개월	16	10.26
	4~6개월	29	18.59
	7~9개월	20	12.82
	10~12개월	37	23.72
	13개월 이상	54	34.62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 가구의 양육기본수당의 지출 항목과 지출액 분석 결과 1순위에서 양육용품구입비로 지출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72.44%로 다수였으며, 식비 7.69%, 아동 관련 저축보험 주거관리비

각 5.13% 등이었고, 지출액 평균은 24.53만원( $SD=6.50$ )이었음. 2순위는 88명이 응답하여 1순위 한 항목에서만 30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 약 43.6%였고(68명), 장난감, 도서 등 구입이 35.23%, 의류구입비 34.09%의 비율을 보였고 지출액은 평균 10.20만원( $SD=5.46$ )였음.

- 지출 항목 3순위는 27명이 응답하여 주어진 항목에서 2가지 항목에만 지출하는 사람이 약 82.7%(129명)인 것을 알 수 있고, 3순위 지출 항목은 의류 구입비 33.33%, 장난감, 도서 등 구입 18.52%, 문화생활비 14.81%로 나타났음.
- 종합하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주로 양육용품구입비, 의류구입비, 장난감, 도서 구입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4-12]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출 항목 및 지출액

구분	빈도(평균)	비율(표준편차)
1순위	식비	12
	교육비	4
	양육용품구입비	113
	문화생활비	1
	의류구입비	4
	장난감, 도서 등 구입	1
	저축·보험	8
	주거 관리비	8
	부채상환	5
	계	156
2순위	지출액	(24.53)
	식비	15
	교육비	1
	양육용품구입비	4
	보건의료비	2
	문화생활비	4
	의류구입비	30
	장난감, 도서 등 구입	31
	부채상환	1
	계	88
3순위	지출액	(10.20)
	식비	2
	외식비	1
	양육물품구입비	1
	보건의료비	2

구분	빈도(평균)	비율(표준편차)
1순위	문화생활비	4
	의류구입비	9
	장난감, 도서 등 구입	5
	저축·보험	2
	부채상환	1
	계	27
	지출액	(9.30)
4순위	식비	1
	의류구입비	2
	장난감, 도서 등 구입	2
	계	5
	지출액	(5.20)
5순위	문화생활비	1
	장난감, 도서 등 구입	1
	계	2
	지출액	(2.50)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정책의 중요도는 평균 4.71 점( $SD=0.50$ ) ‘매우 그렇다’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만족도는 평균 3.18점( $SD=0.88$ )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비해 만족도는 낮았고, 향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4-13]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중요도와 만족도

N= 156, 단위 : 빈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중요도	-	-	2	46	108	4.71	0.50
	-	-	1.28	29.49	69.23		
만족도	2	29	76	36	13	3.18	0.88
	1.28	18.59	48.72	23.08	8.33		

- 다음으로 모든 조사 대상자가 인식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도입과 대상 연령 조정 의견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14]와 같음.
- 먼저,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재원이 자체 예산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조

사 대상자는 50.85%로, 약 절반 정도였고, 교차분석 결과 양육기본수당 대상자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대상 62.18%, 비대상 38.13%), 대상자 중 자체 예산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37.82%였음.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도입에 대해서는 보통이다 32.88%, 잘한 편이다 30.51%, 매우 잘했다 24.07%, 잘못된 편이다 12.54%, 평균 3.66점 ( $SD=0.98$ )으로 보통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 다음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 연령과 연령 구간별 최고 지원 금액을 설명하고,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 연령 기준 조정을 가정했을 때 적절한 연령은 0-7세가 47.46%, 0-8세가 31.53%, 0-5세가 9.49% 등으로 나타났음. 즉, 조사 대상자들은 최소 연령 기준 변동 없이 최대 연령 기준 상향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표 4-14]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예산, 도입 적절성, 연령 조정에 대한 인식

N= 156, 단위 : 빈도, %

구분		빈도(평균)	비율(표준편차)
자체 예산 지원 인식	예	150	50.85
	아니오	145	49.15
도입에 대한 인식	잘못된 편이다	37	12.54
	보통이다	97	32.88
	잘한 편이다	90	30.51
	매우 잘했다	71	24.07
	평균	(3.66)	(0.98)
연령 기준 조정	0-1세	1	0.34
	0-3세	1	0.34
	0-4세	3	1.02
	0-5세	28	9.49
	0-6세	6	2.03
	0-7세	140	47.46
	0-8세	93	31.53
	0-9세	7	2.37
	0-10세	7	2.37
	0-13세	9	3.05

## 2.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효과성 탐색

### 1)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 여부에 따른 자녀 양육 특성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 여부에 따른 자녀 양육 특성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는 다음 [표 4-15]와 같음.

[표 4-15]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 여부에 따른 자녀 양육 특성

구분	양육기본수당 대상		양육기본수당 비대상		$\chi^2 / t$
	빈도 (M)	비율 (SD)	빈도 (M)	비율 (SD)	
주 양육자	어미니	142	91.03	116	83.45
	아버지	2	1.28	1	0.72
	조부모	10	6.41	22	15.83
	민간돌보미	2	1.28	0	0
자녀 양육 시간	본인 평일	(487.11)	(25.02)	(246.76)	12.06
	본인 주말	(611.34)	(22.74)	(392.58)	(17.32)
	배우자 평일	(295.64)	(21.33)	(169.85)	(13.64)
	배우자 주말	(519.10)	(26.15)	(281.08)	(18.47)
양육 부담 만족도	만족하지 않는다	4	2.56	3	2.16
	만족하지 않는다	46	29.49	28	20.14
	보통이다	49	31.41	47	33.81
	만족한다	56	35.90	60	43.17
	매우 만족한다	1	0.64	1	0.72

\*p<.05, \*\*\*p<.001

- 먼저 주양육자의 경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에서 어머니가 주양육 자인 비율이 약간 높았음. 자녀 양육 시간은 본인 및 배우자의 평일, 주말 모두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자의 자녀 양육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0-2세 영·유아가 있는 가구가 더 많은 양육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으로 추측됨. 양육 부담 만족도는 대상자와 비대상자 간의 차이가 없었음.
- 다음으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 여부에 따른 자녀에 대한 인식, 이상적인 자녀 수, 자녀 가치,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는 다음 [표 4-15]와 같음.

- 자녀에 대한 인식에서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자들은 58.97%, 비대상자들은 24.46%로 대상자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즉, 자녀 출산을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대상자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없어도 무관하다’의 비율은 대상자가 8.97%, 비대상자 2.88%로 대상자의 비율이 더 높았음.
- 다음으로 이상적인 자녀 수와 자녀 가치는 대상자와 비대상자 간 차이가 없었으나,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대상자가 평균 3.38점, 비대상자가 평균 2.15점으로 양육기본수당 대상자의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를 양육 시간 분석 결과와 함께 해석하면, 0-2세 자녀가 있는 대상 가구는 자녀 양육 시간이 비대상 가구에 비해 더 길고, 이에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추론해 볼 수 있음.

[표 4-16]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 여부에 따른 자녀에 대한 태도

구분	양육기본수당 대상		양육기본수당 비대상		$\chi^2 / t$	
	빈도 (M)	비율 (SD)	빈도 (M)	비율 (SD)		
자녀에 대한 인식	꼭 있어야 한다	92	58.97	34	24.46	8.5021*
	있는 것 같지 않거나 나을 것 같다	19	12.18	85	61.15	
	없어도 무관하다	14	8.97	4	2.88	
	모르겠다	31	19.87	16	11.51	
이상적인 자녀 수(n=188)	(1.83)	(.05)	(1.80)	(.06)	0.4445	
자녀 가치(8문항 평균)	(3.38)	(.05)	(3.33)	(.49)	0.8682	
양육 스트레스(11문항 평균)	(2.15)	(.03)	(1.88)	(.06)	4.8741***	

\*p<.05, \*\*\*p<.001

## 2)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 여부에 따른 자녀 양육부담

- 다음으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 여부에 따른 자녀 양육비, 자녀양육비 부담에 차이가 있는지를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4-17]과 같음.<sup>12)</sup>
- 먼저, 자녀 양육비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자가 71.26만원, 비대상

자가 57.63만원으로 양육기본수당 대상자의 자녀 평균 양육비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t=5.3257$ ,  $p<.001$ ). 자녀 양육비 부담은 양육기본수당 대상이 17.63%, 비대상이 12.60%로 자녀 양육비 부담은 양육기본수당 대상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t=6.6425$ ,  $p<.001$ ).

[표 4-17]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에 따른 자녀 양육 부담 I : 독립표본 t 검정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양육 부담	자녀 양육비	대상	71.26	21.41	5.3257***
		비대상	57.63	22.53	
	자녀 양육비 부담	대상	17.63	5.81	6.6425***
		비대상	12.60	4.68	

\*\*\* $p<.001$

-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대전형 양육기본수당과 종속변수인 자녀 양육비, 자녀 양육비 부담의 관계를 더욱 심층적으로 검토하고자,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음. 구체적으로 자녀 양육비와 자녀 양육비 부담과 관련 있는 변수로 가구소득을 통제변수로 공분산 분석을 수행하였음.
- 분석 결과, 가구소득을 통제하였을 때 양육기본수당 비대상자에 대상자의 자녀 양육비 지출이 더 많았음( $F=22.98$ ,  $B=-48.32$ ). 즉,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 양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자들의 자녀 양육비 지출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다음으로 가구소득을 통제했을 때 양육기본수당 비대상자에 비해 대상자의 자녀 양육비 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F=47.71$ ,  $B=-.17$ ). 즉, 가구소득이 증가하면 양육비 부담은 감소하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도, 양육기본수당 대상자의 자녀 양육비 부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12) 통제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부록 2에 수록하였음.

[표 4-18]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에 따른 자녀 양육 부담II: 공분산분석

구분			F	B(coeff.)
양육 부담	자녀 양육비	양육기본수당(준거:대상)	22.98***	-48.32***
		가구소득	0.23	-.04**
		양육기본수당×가구소득	12.67***	.07***
	자녀 양육비 부담	양육기본수당(준거:대상)	47.71***	-.17***
		가구소득	150.49***	-.00***
		양육기본수당×가구소득	31.22***	.00***

\*p<.05, \*\*p<.01 \*\*\*p<.001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자들이 비대상자에 비해 자녀 양육비 지출이 더 많고, 자녀 양육비 부담은 또한 높은데, 이는 가구소득과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즉,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소득이 낮은 대상자 집단은 자녀 양육비 부담이 클 가능성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할 수 있음.

### 3)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 자녀 양육 부담에 미치는 영향

- 다음으로 더욱 심층적인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효과성 탐색을 위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독립변수로 자녀 양육비, 자녀 양육비 부담을 종속변수로, 자녀 요인과 부모 요인을 통제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음.
- 통제변수로 자녀 요인은 자녀 수와 첫째 자녀의 연령, 부모 요인에는 부모의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경제활동,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가구원 수, 주거 소유 형태가 포함되었음.
- 자녀 양육비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I 과, 자녀 양육비 부담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II의 이분산성 검정(Breusch-pagan test)을 실시하였고, 모형 II의 경우 등분산이 가정을 위배하여 이분산성을 통제하고 모형을 추정하였음(민인식·최필선, 2012).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은 VIF값을 추정하여 확인하였고, VIF값이 10 이상인 변수는 제외하고 모형을 추정하였음. 결과적으로 두 모형 모두에서 자녀 수와 가구원 수의 VIF값이 높게 나타나, 최종 모형에서는 가구 수를 제외하고 분석을 수행하였음.

- 먼저, 자녀 양육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4-19]와 같음.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자녀양육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변수 중에서는 교육 수준, 맞벌이 여부가 자녀 양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9] 모형 I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 자녀 양육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변수		B(coeff.)	S.E.	beta	VIF <sup>1)</sup>		
자녀요인	자녀 수		-4.081	3.145	-0.088	11.29		
	첫째 자녀 연령		-1.280	1.074	-0.118	4.00		
부모요인	성별(여성)		-6.126	4.199	0.118	2.49		
	연령		-0.724	0.394	-0.127	1.80		
	교육수준	전문대졸	-5.967	3.451	-0.130	2.15		
	(고등학교 졸업) 4년제 이상		9.174*	3.917	0.186	2.39		
	경제활동(참여)		-4.961	5.591	0.107	5.47		
	맞벌이		12.323*	5.446	0.266	5.23		
	가구소득		-0.010	0.016	-0.050	2.58		
	가구원 수		-	-	-	12.71		
	자가 소유(자가)		-2.185	2.864	-0.043	1.18		
	대전형 양육기본수당(대상)		9.507	3.947	0.207	3.08		
cons			109.048***					
N			295					
F			8.45***					
$R^2$			.2491					

\* $p<.05$ , \*\*\* $p<.001$

1) VIF는 자녀 수와 가구원수 모두 포함했을 때의 값임

-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 집단이 비대상 집단에 비해 자녀 양육비 지출이 많았음( $b=.207$ ,  $p<.05$ ),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4년제 이상 졸업자의 자녀 양육비 지출이 많았으며( $b = .186$ ,  $p<.05$ ),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자녀 양육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b=.266$ ,  $p<.05$ ).

- 다음으로 자녀 양육비 부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표 4-20]) 통제 변수 중 연령( $b=.0207$ ,  $p<.05$ ), 교육수준( $b=.0207$ ,  $p<.05$ ), 가구소득이 자녀양육비 부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이 비대상에 비해 자녀 양육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b=.154$ ,  $p<.05$ ). 즉,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 자녀 양육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없다고 할 수 있음.

[표 4-20] 모형II: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 자녀 양육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

구분	변수		B	S.E.	beta	VIF
자녀요인	자녀 수		-0.005	0.007	-0.039	11.29
	첫째 자녀 연령		-0.004	0.002	-0.117	4.00
	성별(여성)		-0.016	0.010	0.103	2.49
	연령		-0.002*	0.001	-0.142	1.80
부모요인	교육수준	전문대졸	-0.010	0.009	-0.072	2.15
	(고등학교졸업)	4년제 이상	0.028**	0.010	0.189	2.39
	경제활동(참여)		0.016	0.014	0.115	5.47
	맞벌이		-0.029	0.014	-0.209	5.23
	가구소득		-0.000***	0.000	-0.548	2.58
	가구원 수		-	-	-	12.71
	자가소유(자가)		0.000	0.007	0.001	1.18
	대전형 양육기본수당(대상)		0.021*	0.010	0.154	3.08
	cons				0.409***	
	N				295	
		F			25.95***	
		R <sup>2</sup>			.4955	

\* $p<.05$ , \*\* $p<.01$ , \*\*\* $p<.001$

- 정리하면 본 고의 분석 결과는 대상 가구의 자녀 양육비 지출은 증가 하였지만, 자녀 양육비 부담은 감소하지 않았다는 김보름(2020)과 유사한 것으로, 결과의 해석은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음. 모형II에서 통제변수의 표준화 계수 결과를 보면, 가구소득이 미치는 영향이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이에 가구소득 대비 자녀 양육비로 산출되는 자녀 양육비 부담에 대한 가구소득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고, 또 한편으로는, 양육기본수당 대상 집단보다

비대상 집단의 가구 소득이 높았기 때문에<sup>13)</sup>, 자녀 양육비 부담에 대한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났다고 추론해 볼 수 있음. 다시 말해서 가구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자들의 양육비 지출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함.

- 종합하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양육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는 없으나, 자녀 양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즉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 영·유아 생존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녀 양육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나아가서 영·유아 권리 보장 증진의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추론이 가능함.

---

13) 대전형 양육기본수당과 가구소득의 독립표본  $t$ 검증 결과는 [부록 표 3] 참조.



## 결론 및 논의

- 1절. 연구 결과의 요약
- 2절. 정책 제언

**5장**



## 5장 결론 및 논의

### 1절. 연구 결과의 요약

- 본 고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성과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 이를 위해 대전시 거주 0-7세 자녀가 있는 부모 총 295명을 대상으로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 자녀 특성, 자녀 양육 특성, 자녀 관련 인식, 자녀 양육 부담 등을 포함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효과성 탐색을 위해 정책 대상 여부에 따른 자녀 양육 특성과 자녀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대전형 양육기본 수당을 독립변수로 자녀 양육비와 자녀 양육비 부담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음.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효과성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비대상자에 비해 대상자들의 자녀 양육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0-2세 영·유아가 있는 가구가 더 많은 양육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자녀에 대한 인식에서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자들은 58.97%, 비대상자들은 24.46%로 나타나. 대상자들이 자녀 출산을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음.
-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자가 평균 3.38점, 비대상자가 평균 2.15점으로 대상자의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를 양육 시간과 함께 해석하면 0-2세 자녀가 있는 대상자들의 양육 시간이 비대상 가구에 비해 더 길며, 이로 인해 양육에 대한 스

트레스가 더 높다고 추론해 볼 수 있음.

- 자녀 양육비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자가 71.26만원, 비대상자가 57.63만원으로 대상자가 더 많은 자녀 양육비를 지출했고, 가구소득 대비 자녀 양육비로 산출한 자녀 양육비 부담은 양육기본수당 대상이 17.63%, 비대상이 12.60%로 대상자의 자녀 양육비 부담이 더 높았음. 가구소득을 통제했을 경우에도 독립표본  $t$ 검정과 유사하게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자들이 비대상자에 비해 자녀양육비 지출이 더 많고, 자녀 양육비 부담 또한 높았음.
- 더욱 심층적인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효과성 탐색을 위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독립변수로 자녀 양육비, 자녀 양육비 부담을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상이 비대상에 비해 더 많은 자녀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었고, 자녀 양육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자녀 양육비 부담에 대한 효과의 경우 가구소득 대비 자녀 양육비로 산출되는 자녀 양육비 부담에 대한 가구소득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어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즉, 자녀 양육비 부담에 대한 가구소득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며, 대상자의 가구소득은 비대상에 비해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대상자에 비해 가구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이 자녀 양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결론적으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자녀 양육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없었으나, 자녀 양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음.
- 종합하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관련이 있으며, 영·유아 생존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녀 양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영·유아 권리보장과 관련된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2절. 정책 제언

- 본 고의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려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효과성에 대해서는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 본 고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수행 시기를 고려하여 자녀 양육 부담이라는 제한적인 차원의 지표만을 고려하였음. 이에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지만,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고, 횡단이 아닌 종단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 더욱 심층적인 효과성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이 일정 시간이 경과한 이후 더 많은 표본 수를 확보하고 다양한 지표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효과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요구됨.
- 둘째,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 대상 연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출산지원금에서 확대된 정책으로 인구 정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동수당과 같이 보편적 수당의 성격 또한 지니고 있음. 따라서 인구 이동, 출산율 재고뿐만 아니라 생존권, 발달권 등 영·유아의 권리증진 측면이 중요하다 할 수 있음. 본 고의 분석 결과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대부분 영·유아 관련 소비로 지출되며, 자녀 양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음. 이는 영·유아의 생존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영·유아 권리 증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효과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대상 연령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다만, 정책 시행 시작 시기인 2022년과는 다르게 2023년에는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변화하면서 0-1세에게 지원되는 급여액이 증가한 만큼, 대상 연령 확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셋째,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대전 양육기본수당이 자녀 양육비 지출 증가 효과가 있지만, 자녀 양육비 부담에 대한 영향력은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는 양육기본수당이 자녀 양육비 지출에 비해 가구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없었기 때문

일 수 있음. 지급액의 증가는 가구의 가치분소득을 증가시켜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 구체적으로는 대상 전체의 지급액을 상향하거나,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자녀 양육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득별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넷째,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금 지급뿐만 아니라 돌봄 부담 완화 지원을 함께 결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분석 결과 0-2세 자녀가 있는 대상자들이 주양육자는 모이며, 양육 시간이 더 길고, 양육 부담의 정서적인 측면으로 양육스트레스가 크다는 점은 전반적인 영·유아 돌봄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어린이집, 육아종합센터 중심 시간제 보육(6개월-3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영아종일제서비스와 더불어 전반적인 영·유아 대상 돌봄서비스의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시간제 보육, 영아종일제서비스의 추가적 지원이나 대상 기준 확대(현재 맞벌이, 한부모 등), 시간제 보육 인력 확보, 6-12세 대상 거점온돌방 등의 돌봄서비스를 영·유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함.

## 참고문헌

- 강수경·김경숙·변혜원(2018). “부모의 생활만족도, 자녀가치, 자녀기대의 인식 차이: 자녀의 발달단계를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제10권, 제2호, 229-248.
- 강수경·정미라(2013). “임신기 부모의 생활만족도와 자녀가치가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제80호, 85-107.
- 강지영(2020). “아동수당도입이 아동가구의 소득과 빈곤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 제71권, 제1호, 63-87.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제5호, 141-150.
- 김대철(2018). “아동수당제도가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효과”,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제20집 제2호. 3-25.
- 김민곤·천지은. (2016). “저출산 정책으로써 출산장려금의 정책 효과성 연구: 서울 25개 자치구들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제30권, 제2호, 163-190.
- 김보름(2021). 〈아동수당이 개별가구 재정에 미치는 효과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석주·조영민(2022). “서울시 맞벌이 부부가구의 추가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출산장려정책의 경험과 기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 제69권, 제3호, 97-122.
- 김우영·이정만(2018).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 충청지역을 대상으로”, 〈노동정책 연구〉 제18집 제2호, 61-98.
- 김이래(2021). 〈아동수당의 정책효과성 분석 - 아동가구의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상호(2018). “아동수당제도 도입이 빈곤과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재정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34권, 제4호, 93-119.
- 박은순·하태수(2018), “출산장려금 정책 확산의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56권, 제1호, 213-239.
- 박창우·송현재(2014).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추정”, 〈응용경제〉, 제16권, 제1호, 5-24.
- 민인식·최필선(2012). 〈STATA 기초통계와 회귀분석〉. 지필미디어.
- 석호원(2011)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5권, 제2호, 43-180.
- 송영주·이미란·천희영(2014). “첫 자녀 출산 후 취업모와 전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자녀가치, 양육지식, 자녀미래기대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제35권, 제5호, 15-35.

- 송현재·김지영(2013), “출산장려금이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재정정책 논집〉, 제15권, 제1호, 3-27.
- 송현재·김현아(2014). “출산장려금과 지역 간 인구이동”, 〈응용경제〉, 제16권, 제3호, 165-199.
- 오삼권·권영주(2018).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율 영향요인 연구: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책적 요인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제32권 제1호, 55-81.
- 유재민(2019). 〈가구특성에 따른 아동수당의 빈곤완화와 소득재분배효과: 아동 관련 세제지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해미 外(2021).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21-01.
- 이경희·민인식(2018), “아동수당이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활용”, 〈조사연구〉, 제19권, 제2호, 25-49.
- 이래혁·남재현(2020), “한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이 아동가구의 소비에 미친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제69권, 제3호, 27-56.
- 이삼식 外(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정립 外(2022).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연구 2022〉.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육아정책연구소.
- 장인수·정찬우(2022).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 다중범위지리가중회귀모형의 적용과 함의”, 〈보건사회연구〉, 제42권, 제4호, 305-325.
- 정호영(2020). “출산장려금의 출생률 제고효과 분석 -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보〉 제29권, 제1호, 23-46.
- 최윤경 外(2022). 〈양육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양육지원법 제정 기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22-08.
- 최영·김슬기(2017). “OECD 국가의 아동가족 현금지원정책과 출산율간의 관계 -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 〈한국아동복지학〉 제60호, 59-86.
- 홍윤정·김선희·이영애(2023).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유아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관련 연구 동향분석”. 〈유아교육연구〉, 제43권, 제3호, 129-157.
- 대한민국정부(202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 대한민국정부(2023a),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 대한민국정부(2023b),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 단체)〉.

보건복지부(2022). <2022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2023a), <2023 아동수당 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23b) <2023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23c)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KOSIS 홈페이지, 「인구동향조사」, 2022,

# 부록 1. 설문지

※ NO.

년	-	월	-	일	-	ID
2023	-	-	-	-	-	

## 자녀 양육(돌봄)현황 및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대전세종연구원은 대전시 현안을 분석하고 정책 방안을 개발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대전시 정책연구 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대전의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양육 환경과 더불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과 관련된 인식 및 향후 발전방안 제시를 위한 내용으로 조사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만으로 활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관	대전광역시·대전세종연구원	수행	
담당	대전세종연구원 양성욱 연구위원 (042-530-3545, e_minor@dsi.re.kr)	담당	

### I. 다음은 가구 자녀와 자녀 양육(돌봄) 관련 질문입니다.

1. 귀하 가구의 자녀는 총 몇 명입니까? \_\_\_\_\_명

2. 귀하 가구의 자녀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어린 순으로 5명까지).

1) 출생년도	2) 성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③ 해당없음: 초등학생)
첫째 _____년도	① 여아	② 남아	① 이용함 ② 이용하지 않음 ③ 해당없음
둘째 _____년도	① 여아	② 남아	① 이용함 ② 이용하지 않음 ③ 해당없음
셋째 _____년도	① 여아	② 남아	① 이용함 ② 이용하지 않음 ③ 해당없음
넷째 _____년도	① 여아	② 남아	① 이용함 ② 이용하지 않음 ③ 해당없음
다섯째 _____년도	① 여아	② 남아	① 이용함 ② 이용하지 않음 ③ 해당없음

### 3. 현재 귀하의 가구에 자녀의 주양육자는 누구입니까?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자녀의 조부모                ④ 기타 친인척  
 ⑤ 공공 아이돌보미             ⑥ 민간 돌보미(베이비시터 등)  
 ⑦ 기타( )

\* 주양육자: 주 활동 시간 (오전 7시~밤 11시 사이) 동안 해당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가장 긴 대상자를 말함.

- ① 주양육자가 어머니 혹은 아버지인 경우: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주양육자'로 응답함.  
 ② 아동이 기관 돌봄서비스(예-어린이집)만 이용하는 경우: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주양육자'로 응답함.  
 ③ 아동이 개별 돌봄서비스(예-아동의 조부모나 기타 친인척, 공공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만 이용하는 경우: 개별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응답함.  
 ④ 아동이 기관 돌봄서비스와 개별 돌봄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 개별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응답함.

### 4. 귀하와 배우자는 자녀 양육(돌봄)을 하루에 몇 시간쯤 하십니까?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여 응답해 주십시오(배우자와 공동 양육시간까지 포함하여 응답).

구분	평일(1일 평균)				주말(1일 평균)			
1) 응답자			시간				시간	
2) 배우자			시간				시간	

#### 4-1. 귀하와 배우자의 자녀 양육(돌봄) 분담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1) 응답자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 배우자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주말부부등), 배우자가 없는 경우(한부모 등)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돌봄)'은 만0-8세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5. 귀하는 현재 배우자와 자녀 양육(돌봄)을 분담하는 정도에 만족하십니까?

- |                  |               |        |        |              |
|------------------|---------------|--------|--------|--------------|
| ① 전혀 만족하지<br>않는다 | ② 만족하지<br>않는다 | ③ 보통이다 | ④ 만족한다 | ⑤ 매우<br>만족한다 |
|------------------|---------------|--------|--------|--------------|

6. 귀하게서(지난 3개월간)자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자녀 별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첫째 자녀	둘째자녀	셋째자녀	넷째자녀	다섯째 자녀																																													
1)어린이집/ 유치원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2)공교육비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3)사교육비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4)돌봄비용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5)식비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6)양육용품비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7)보건·의료 비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8)문화생활비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9)기타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table border="1"><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r></table> 만₩									

※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료는 수입비, 특별활동비 등 포함

공교육비는 초등학교 등록금, 방과후 학교 비용 등 포함

사교육비는 학원, 학습비, 과외비 등 포함

기타는 의복, 장난감, 용돈, 의료, 교통, 통신 등 보기 외에 자녀를 위한 모든 비용 포함

II. 다음은 자녀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7. 귀하는 본인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꼭 있어야 한다                    ②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③ 없어도 무관하다                ④ 모르겠다.

8.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이상 자녀 수 \_\_\_\_\_명  
② 모르겠다

9. 둘째 혹은 셋째 이상의 자녀의 출산을 결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정의 경제적 여건.	①	②	③	④	⑤
2) 본인의 안정된 직업	①	②	③	④	⑤
3) 배우자의 안정된 직업	①	②	③	④	⑤
4) 주거 여건	①	②	③	④	⑤
5)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	①	②	③	④	⑤
6) 배우자와의 육아 분담	①	②	③	④	⑤
7) 보육/양육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정책	①	②	③	④	⑤
8) 육아 휴직, 출산 휴가 이용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10. 다음은 자녀에 대한 다양한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있으면 외롭고 허전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를 키우는 일은 기쁨과 행복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5)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①	②	③	④	⑤

### III. 다음은 우울감 및 자녀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 관련 질문입니다.

11. 다음은 우울 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30일간 귀하는 어떠셨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안느낌	별로 안느낌	종종 느낌	대체로 느낌	항상 느낌
1)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지난 30일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월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지난 30일 동안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은 자녀를 양육(돌봄)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어느 정도 일치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쳐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①	②	③	④	⑤
6) 요즘은 육아 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7)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8)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①	②	③	④	⑤
1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1)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자녀 양육(돌봄)관련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13. 다음은 현재 시행되는 지원정책 중 현금 및 현물/바우처와 관련된 정책들입니다. 각 정책별로 이용 여부, 만족도에, 중요도에 대해 차례로 주어진 보기에서 선택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종류	이용여부	중요도	만족도
		① 이용함 ② 이용하지 않음 ③ 해당없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중요함 ⑤ 매우 중요함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현금	1)아동수당			
	부모급여(현금)			
	보육료(이용권)			
	종일제아이돌봄 (이용권)			
	3)가정양육수당			
	4)출산급여			
	5)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6)근로장려세제			
	7)자녀장려세제			
	1)첫 만남 이용권			
현물/ 바우처	2)건강보험임신 출산 진료비지원			
	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4)아이돌봄지원사업			
	5)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 아동수당: 만 8세(95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월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 부모급여: 만 0~1세 아동에게 만0세 70만원, 만1세에게 35만원을 지원하되, 어린이집 이용시 만0세는 차액현금지급, 만1세는 서비스이용권(바우처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2022년생부터 해당)

※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월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2023년생은 24개월부터 지원 대상이므로, 올해는 해당하지 않음)

※ 출산급여: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 기간 중 휴기를 유급으로 90일까지 사용하는 제도

※ 배우자 출산급여: 출산한 아내가 있는 근로자에게 산전과 산후 기간 중 휴기를 유급으로 10일까지 사용하는 제도

※ 근로장려세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훌별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

※ 첫만남 이용권 :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

▽ 다음은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4. 현재 귀하께서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받고 계십니까?

① 예 (☞14-1번 문항으로)

② 아니요(☞15번 문항으로)

14-1. 현재 귀하께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지금받은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3개월      ② 4~6개월      ③ 7~9개월      ④ 10~12개월      ⑤ 13개월 이상

14-2. 귀하께서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아래의 보기 중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총액 30만원을 기준으로 응답, 만0~2세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총액을 기준으로 응답)

구분	지출항목	월평균 지출액
1순위		<input type="text"/> 만원
2순위		<input type="text"/> 만원
3순위		<input type="text"/> 만원
4순위		<input type="text"/> 만원
5순위		<input type="text"/> 만원

①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② 외식비
③ 교육비	④ 양육 물품구입비(기저귀, 분유 등)
⑤ 보건의료비(건강보험료 제외)	⑥ 문화생활비(문화비, 여행 등)
⑦ 의류구입비(옷, 신발 등)	⑧ 아동 장난감, 도서 등의 구입
⑨ 저축·보험	⑩ 주거관리비(관리비, 월세 등)
⑪ 교통, 통신비(인터넷, 휴대전화)	⑫ 부채상환
⑬ 기타( <input type="text"/> )	

14-3. 귀하께서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 영·유아지원 정책으로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며,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전형 양육수당의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2) 대전형 양육수당의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15. 귀하께서는 만0~2세에게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 정부에서 지급되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과는 별개로 대전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된다는 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지금 알게 되었다.)

16. 귀하께서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도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못 됐다    ② 잘못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한 편이다    ⑤ 매우 잘했다

17. 현재 부모급여는 만0~1세, 아동수당은 만0~7세 아동에게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 거주 만0~1세는 부모급여, 대전형양육기본수당, 아동수당(0세 최대 110만원, 1세 75만원)을, 만2세는 대전형양육기본수당과 아동수당(40만원)을, 만3세~7세는 아동수당(1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귀하께서는 현재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연령기준을 조정한다면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 \_\_\_\_\_ 세 ~ 만 \_\_\_\_\_ 세

※ 아동수당: 만 8세(95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월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 부모급여: 만 0~1세 아동에게 만0세 70만원, 만1세에게 35만원을 지원하되, 어린이집 이용시 만0세는 차액현금지급, 만1세는 서비스이용권(바우처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2022년생부터 해당)

※ 대전형양육기본수당: 대전시 거주 만 2세(36개월) 이하 아동에 대해 월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VI. 다음은 응답자의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8.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성

② 남성

19. 귀하의 출생연도는 언제입니까?

\_\_\_\_\_년

20. 귀하의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전문대 졸업

⑥ 4년제 대학 졸업

⑦ 대학원 재학 이상

21. 귀하의 혼인 상태는 무엇입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이혼, 별거 등)

22. 귀하는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① 예(<sup>(☞22-1번 문항으로)</sup>)

② 아니오(<sup>(☞23번 문항으로)</sup>)

22-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사무직 노동자

② 생산직 노동자

③ 자영업자

④ 학생

⑤ 농립축어업

⑥ 기타(                )

22-2. 귀하의 종사상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① 상용직(계약 1년이상 정규직)

② 임시직(계약1년미만~1년이상)

③ 일용직(계약 1개월미만)

④ 자영업자

⑤ 무급가족종사자 및 기타

23. 귀하의 가구는 맞벌이를 하고 계십니까?

① 맞벌이

② 외벌이

③ 한부모

④ 기타(                )

24. 귀하의 댁에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실수령액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월평균 실수령 가구 소득 \_\_\_\_\_ 만원

※ 가구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여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한 것을 지칭함

※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25. 귀하의 가구의 총 가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

\_\_\_\_\_명

26.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떤 형태입니까?

- |             |      |             |
|-------------|------|-------------|
| ① 자가        | ② 전세 | ③ 보증금 있는 월세 |
| ④ 보증금 없는 월세 | ⑤ 무상 |             |

27. 귀하께서는 대전시 어느 구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 |      |      |      |       |       |
|------|------|------|-------|-------|
| ① 동구 | ② 중구 | ③ 서구 | ④ 대덕구 | ⑤ 유성구 |
|------|------|------|-------|-------|

※ 질문에 응답해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통제변수와 종속변수 관계

[부록 표 1] 통제변수별 자녀 양육비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 F
자녀 수	1명	165	67.55	24.70	2.3039*
	2명 이상	130	61.40	20.07	
부모 성별	여성	216	63.36	23.42	-1.8345*
	남성	79	68.88	21.19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51	64.85	25.29	14.45***
	전문대 졸업	151	58.91	19.33	
	4년제 졸업 이상	93	74.47	23.96	
경제활동	예	171	66.07	23.86	1.0882
	아니오	124	63.13	21.60	
맞벌이	맞벌이	126	65.08	24.54	0.1573
	외벌이	169	64.66	21.75	
자가 소유	자가	81	60.98	20.00	-1.7844*
	자가 외	214	66.30	23.84	

\*p<.05\*, \*\*\*p<.001

[부록 표 2] 통제변수별 자녀 양육비 부담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 F
자녀 수	1명	165	.163	.074	3.1447***
	2명 이상	130	.138	.061	
부모 성별	여성	216	.153	.071	0.0788
	남성	79	.152	.065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51	.167	.072	12.60***
	전문대 졸업	151	.134	.060	
	4년제 졸업 이상	93	.176	.073	
경제활동	예	171	.136	.062	-5.0907***
	아니오	124	.176	.073	
맞벌이	맞벌이	126	.121	.054	-7.0901***
	외벌이	169	.176	.071	
자가 소유	자가	81	.127	.070	-3.9353***
	자가 외	214	.162	.051	

\*\*\*p<.001

[부록 표 3] 대전형 양육기본수당과 가구 소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 F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	대상	156	434.17	107.42	-3.3436***
	비대상	139	480.33	129.54	

\*\*\*p<.001

[부록 표 4]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구분	첫째자녀 연령	부모연령	가구소득	가구원수	배우자평일 영수증	배우자주말 영수증	자녀 영수증	자녀영수증 부담	양육스트 레스	이상적인 자녀 수	자녀 가치
첫째자녀 연령	1,000										
부모연령	.565***	1,000									
가구소득	.352***	.237***	1,000								
가구원수	.400***	.140*	.177**	1,000							
배우자평일 영수증	-.318***	.051	-.215***	-.026	1,000						
배우자주말 영수증	-.368***	-.125*	-.263***	.053	.687***	1,000					
자녀양육 비	-.361***	-.236***	-.058	-.122*	.313***	.514***	1,000				
자녀영수증 부담	-.494***	-.347***	-.567***	-.180**	.349***	.542***	.817***	1,000			
양육스트 레스	-.080	-.172*	.133*	.086	.028	.220***	.287***	.159***	1,000		
이상적인 자녀 수	.304***	.176*	.179*	.552***	-.014	-.022	-.242***	-.299***	-.032	1,000	
자녀 가치	-.092	.076	-.184	.041	.331***	.536***	.306***	.332***	-.126*	.146*	1,000

\* p&lt;.05, \*\* p&lt;.0.1, \*\*\* p&lt;.001



대전세종연구원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 37(문지동)  
TEL. 042-530-3500 FAX. 042-530-3508  
[www.dsi.re.kr](http://www.dsi.re.kr)

ISBN : 979-11-6075-408-7(93350)